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매뉴얼

2016

난다 뛴다 다른몸 II

상담 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다른 몸을 꿈꾸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 시대에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운동장을 뛰놀며 소리치던 여자어린이들은 어른으로 성장하며 점점 몸을 통제하고 움츠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획일적인 마른 몸을 만드는 것은 몸의 변화 가능성을 잃게 하고 공격 상황에 반격하기도 어렵게 합니다.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는 상쾌함, 옷차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혼자 떠나는 여행의 두근거림이 여성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것일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난다 뛴다 다른 몸(이하 난뛴다)'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여성을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상력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몸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진 여성들이 '난뛴다'에 참여하여 부당한 폭력에 맞서는 내적 신체적 힘과 건강을 기르고, 용기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다른 몸을 꿈꾸는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성폭력에 대응하는 사회적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매뉴얼《난다 뛴다 다른 몸》은 다른 몸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의미와 내용을 상세히 담은 이 책이,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성들의 다른 삶과 다른 몸을 지지하며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시작합시다!

2014.10.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난다 뛴다 다른 몸 II〉 개정증보판을 내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5년부터 길거리괴롭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길거리괴롭힘에 대한 제보 · 제언이 뜨겁습니다. 여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수시로, 어디서건 겪는 폭력과 괴롭힘은 자기방어훈련의 또 다른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게 합니다. 주변인의 몫, 목격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고 습득할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 것이지요.

〈난다 뛴다 다른 몸〉 개정증보판에는 2014년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추가로 담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싣습니다. 자기방어훈련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가고자 하는 여러분께서, 우리 지척의 폭력과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가감 없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제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길거리에서부터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성/소수자가 겪는 폭력과 괴롭힘에 주목하고, 법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 속에서 차별을 배격해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을 생산하며 그 결과물을 배포하겠습니다. 이 책자 역시 부디 즐겁게 읽어주세요.

2016.11.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울츠리지 말고 소리치

몸동작을 작게하라는 요구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
익숙해져 있을수 있다
만큼이나 강점표현도
정당한 분노를 표현해야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여는글 _ 2
개정증보판을 내며 _ 4

Ⅰ. 공공장소 SEXISM: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 _ 9

1. 서론 _ 10
A. 연구의 배경– 일상, 공공장소, 이야기
B. 연구의 필요성과 길거리괴롭힘의 개념 정의

2. 상담통계 분석 _ 21
A. 선행연구 통계로 본 길거리괴롭힘의 '일상성'
B. 상담통계로 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3. 제보사례 분석 _ 43
A. 제보사례 개괄
B. 제보사례 세부분석
C. 2015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 행사 부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참고용)

4. FGI 분석 _ 65
A. 공공장소에서 나타난 괴롭힘 경험의 일상성과 부정적 효과들
B. 장소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
C. 위치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

5. 대응전략과 사례 _ 82
A. FGI에서 나타난 개인적 대응 전략들
B. 각자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감수성 있는 대응의 필요성
C. 해외의 대응 사례
D. 법적 근거의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6. 나가며 _ 90

토론문 1 _개개인의 경험을 정치의 영역으로: 여성혐오와 길거리괴롭힘 _ 94
토론문 2 _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 _ 100
토론문 3 _괴롭힘의 다섯 가지 유형과 차별금지법(안) _ 105

난다 뛴다 다르몸 II

Ⅱ. 우리를 위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_ 111

1. 시작하기 전 : 프로그램의 이해 _ 112

2. 기획단계 : 기획단과 프로그램 구성하기 _ 114

3. 준비단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준비하기 _ 116

4. 실행단계 : 참여자와 함께 훈련하기 _ 121

예시 1] 목표와 규칙을 정하자 _ 123
예시 2] 보는 데서부터 여성스포츠를 시작하자 _ 124
예시 3] 움츠리지 말고 소리쳐보자 _ 126
예시 4] 체력을 튼튼히 기르자 _ 128
예시 5] 유용한 기술을 배워두자 _ 132
예시 6]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자 _ 136

5. 평가단계 : 결과를 나누기 _ 139

Ⅲ. 이분법을 넘어 -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 _ 141

Ⅳ.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역사 _ 149

Ⅴ.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는 OX 퀴즈 _ 171

01

길거리 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

김지민 _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객원연구원
유현미 _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객원연구원
조소연 _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 이 글은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 '공공장소 SEXISM'의 발제문을 수정 · 보완한 글입니다.

1
서론

A
연구의 배경 – 일상, 공공장소, 이야기

> 택시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길을 지나갈 때, 모든 일상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생활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상상할 수 있는 일상인가요? 저는 웃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은 졸이면서 살고 있어요. 죽을까봐.
>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867번 글)**

당신은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가 너무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겐 두렵고 불안한 일상이 누군가에는 겪어 본적 없거나 실감나지 않는 경험이라는, 차이의 심연이었다. '강남역', '노래방'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대중적 도시 일상의 공간에서, 화장실에 가는 인간 보편의 행동이 죽임당함으로 이어진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감을 느낀 존재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의 경험과 이에 대한 발언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이고, 온갖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인 이야기들은 과거 이미 말해졌던 것들의 반복이면서,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여성혐오'라는 언어의 마디로 묶어 새롭게 엮어내는 것들이었다. 2014–2016년의 한국 사회에서 차별, 폭력의 경험은 '(여성)혐오'

라는 감정 양식에 대한 표현 속에서 차별, 폭력의 일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이 2014년 뉴욕의 반성폭력운동단체를 방문했을 때 한 활동가는 젊은 페미니스트와 대학생들이 성폭력 문제의 일상성을 제기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하는 활동을 스치듯 소개해줬다.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을 가시화하는 할러백(Hollaback) 활동이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관련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동영상은 뉴욕 거리를 걷는 여성이 한 나절 동안 겪는 무수한 성적 추근거림과 위협의 언행을 담고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 흑인, 장애인이 거리, 대중교통 등에서 겪은 괴롭힘의 경험을 담은 사례들이 모여 있었다. 사례들은 괴롭힘의 실태 뿐 아니라 대응법을 사진, 동영상,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며 서로가 목격자가 되어 지지하고 도와주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이야기의 힘과 목격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활동이 흥미로워 보였다. 기존의 성폭력 개념이나 여성-피해자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의 범위, 기민한 디지털매체 사용(앱, 플리커 등)도 새로워보였다. 한국의 사례도 모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형 길거리괴롭힘 사례와 실태를 모아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기회를 삼고자 했다.

처음 고민한 것은 'street harassment'의 번역이었다. 길거리라는 표현이 공공/공중장소 일반을 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 sexual harassment의 번역처럼 harassment를 희롱이라 번역할지 말지를 고민했다. 대중교통, 공원, 학교 등의 장소예시를 좀 더 열거하는 것으로 길거리는 그대로 번역하고 harassment는 성희롱이란 용어가 가진 한계[1]를 답습하지 않기

1) '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서로 즐기며 놀리거나 놂"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harassment가 '희롱'으로 번역되면서 성폭력, 성폭행이란 용어보다 덜 심각한, 가벼운 언행이나 장난의 차원으로 성희롱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괴롭힘으로 번역했다.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반추해볼 수 있도록 쫓아오기, 위협, 젠더표현에 대한 간섭, 동성애혐오표현 등 행동의 유형이나 특징을 열거했다. 성적인 언행에만 국한되지 않는, 젠더표현이나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적, 비하적인 언행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길거리괴롭힘 사례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주소를 Jinsang road[2]로 붙였다. '진상'이라는 표현이 한국식 길거리괴롭힘 가해자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폭력가해자 하면 떠오르는 '괴물', '흉악범'이 아니라 주변에 누구나 한번쯤 볼 수 있는 진상, 또한 어떤 상황이나 위치가 만들어내는 일상의 진상짓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랐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5년은 한국에서 새로운 온라인 페미니즘의 흐름이 폭발하고, 그 흐름 속에서 공중화장실, 술집 등에서의 몰카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와도 겹쳤다. 공중화장실, 수영장, 길거리 등에서 촬영된 몰카가 불법 성인사이트인 소라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도 전혀 처벌받거나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여성과 시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공중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없는 사회가 대체 어떤 사회인가, 과연 여성은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모여 소라넷 폐쇄 청원 운동으로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상 속의 성폭력, 괴롭힘은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장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구체화하고 본격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5년부터 시민들의 길거리괴롭힘 제보를 받기 위한 '넌진상'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넌진상(non-jinsang)은 길거리괴롭힘 행위자인 진상을 제보하고, 이를 퇴치하자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2015년 4월부터 길거리괴롭힘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보한 글을 읽어볼 수 있다. (사이트 주소: http://www.jinsangroad.org)

B

연구의 필요성과 길거리괴롭힘의 개념 정의

최근의 성폭력 담론에 대한 연구들은(추지현, 2014; 권인숙 · 이건정, 2013; 김은경 · 이나영, 2015) 성폭력이 점차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트라우마를 강조하는 개인화된 문제로 규정되어 오히려 여성의 취약함과 수동성에 대한 젠더 규범과 모성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피해는 엄청 심각하고 특별한 트라우마처럼 여겨지면서 오히려 상처입고 무기력한 피해자의 모습에 호소하거나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양산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젠더폭력의 구조적 효과나 특징이 분석되지 않으면서 성폭력이 다른 폭력이나 차별 경험과 가지는 연관성과 맥락이 흐려지고 협소해지고 있다.

성폭력이 고정된 피해사건/사실에 대한 법집행과 정책 집행의 문제가 되면서 성폭력은 더 이상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경험에서 출발해 점차 언어로 이론화되는 '과정 중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떤 다양한 경험과 대응, 감정을 구성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경향에 대한 새로운 개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길거리괴롭힘의 사례들은 기존의 성폭력 담론이나 '피해'로 명명하지 않은 경험들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왜 그러할까. 이를 길거리괴롭힘 현상의 특징과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 길거리괴롭힘과 러시안룰렛[3]

러시안룰렛과 문방구 앞의 장난감 뽑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고 있지만 무엇이 걸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타짜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제외.) 총알이 든 총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과연 내 머리를 뚫을까 아닐까. 장난감 뽑기에도 어떤 장난감들이 들었는지는 앞면에 나와 있지만 그것 중 어느 것이 걸릴까, 그것은 뽑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이 성질은 길거리괴롭힘과도 연관성이 있다. 바로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그것은 집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 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남자가 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거나, 모르는 할아버지가 폭언을 쏟아 부으며 때리려 할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밤길에 누가 따라올까.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괴롭힘들이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흔히 알려진,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범법 행위일 경우인 것 외에는 입 밖으로 정확하게 내어 말하기 어려운 경험이고 저 사람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 또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가 가능할까 아닐까.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또는 혹시 내가 무엇을 잘 못 했나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묻기만 하고 그것은 그저 마음속에 불쾌한 경험으로, 그저 무서웠던 경험으로 남아만 있을 뿐 정확하게 명명되지 못 하고 어느 샌가 잊혀진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밤길을 무서워하는 내가, 또 그 사람을 만날까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꾸는 내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흠칫하게 되는 내가 있다. 이 사회의 소수자들은 이러한 괴롭힘들을 경험하

3) 회전식 연발 권총의 여러 개의 약실 중 하나에만 총알을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참가자들이 각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 (출처: 위키피디아)

고 있고 언제나 이런 괴롭힘을 언제 당할까, 걱정하면서도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마땅한 명칭이 없어 고민이었다. 명칭이 없는 것은 가시화되기 어려우며 그것이 문제라 여겨져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 길거리괴롭힘의 개념

그렇다면 이 길거리괴롭힘이란 무엇일까. 이런 경험들에 대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단연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해외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가시화하는 노력과 운동이 있어 왔고, 그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 정리된 개념 정의는 없다. 다양한 학자들과 운동가들이 내린 길거리괴롭힘의 정의는 각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대표적으로는 여성들이, 길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행위, 즉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고 있다(〈표 1〉).[4] '길거리괴롭힘(street harassment)' 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레오나르도 미카엘라(Micaela di Leonardo, 1981)인데, 직장에서의 성폭력, 또는 아동 성학대 등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 질 수도 있는 길거리괴롭힘에 대한 주목을 시작한다. 길거리괴롭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명명 또한 'street harassment', 'public harassment', 또는 'stranger harassment'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괴롭힘

4) Stop Street Harassment는 2008년 인터넷 블로그로 시작하여 2010년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 기관으로, 길거리괴롭힘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길거리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는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http://www.stopstreetharassment.org/resources/definitions/ 참조 (검색일: 2016년 10월 24일).

의 장소성에 주목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모르는 타인이라는 가해자의 특성에 주목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정의를 내린 점이 그 차이이다. 다음의 〈표 1〉은 다양한 단체 및 학자에 의한 길거리괴롭힘 정의를 정리 한 것이다.

〈표 1〉 다양한 단체 및 학자에 의한 길거리 괴롭힘의 정의

학자 및 단체 (년도)	정의
Micaela di Leonardo (1981)	길거리괴롭힘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걸 때 ... 여성의 직장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일어난다**. 표정, 언어 또는 제스쳐로 남성은 여성의 주목을 받거나,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강제로 소통 (interact) 하도록 하는 등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주장한다.
Cynthia Grant Bowman (1993)	길거리괴롭힘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낯선 남성**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을 걸 때 일어나는데**, 확연하게 또는 암암리에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여성의 주목을 침범하거나 또는 침범하려 드는 것이다. 언어라 함은,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거나 여성의 몸 부분들을 지칭하거나 또는 성적인 활동, 성관계를 애걸해대는 것을 포함하거나, 여성은 그 폭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해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힘의 대상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비슷한 어휘들로 해를 가하는 말이나 자연스레 폭력적 분노를 유도하려 하는 것이다.
Carol Brooks Gardner (1995)	공공장소 괴롭힘은 학대(욕설), 괴롭힘, 짜증의 집합으로 공공장소의 특징이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의 소통에 의해 가능하게 한다**. 공공장소 괴롭힘은 꼬집기, 찰싹 때리기, 구타, 고함치기, 상스러움, 모욕, 음흉한 빈정거림, 추파 그리고 스토킹을 포함한다. 공공장소 괴롭힘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례적인 정중함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연속이고, 폭행, 강간 또는 살인과 같은 폭력 범죄로 변하는 것이 그 끝이다.**
Hawley Fogg–Davis (2005)	성적 테러리즘은 길거리괴롭힘의 적절한 묘사이다. 젊은 여성으로서 **당신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절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길거리괴롭힘을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맞서 싸우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것의 교활함(방심할 수 없음)은 꽤 많은 장소로부터 파생된다: semi–private, semi–public, 매일 걷고 앉고 서있는 도시의 길거리들에서 발생하거나, 공원이나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일어난다.
Hollaback! (2005 ~)	길거리괴롭힘은 **성희롱의 한 형태**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중심은 권력격차 (power dynamic)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경시되어 온 집단들 (예를 들어 여성, LGBTQ 등)의 취약점에 대해 공공장소에서의 공격**을 떠올리게 한다. 나아가, 그것은 이러한 집단들의 매일 생활에서 아주 흔한 **성적 대상화**를 강화한다. 홀라백뉴욕에서는 **누가 경험했느냐에 따라 무엇이 정확히 길거리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ey baby, nice tits"처럼 고전적이거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만약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로 소리쳐!

INCITE! Women of Color Against Violence (2000~)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소통이 **당신을 성적이고, 위협하며, 곤란하게 하고, 대상화를 시키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소통이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언어적 그리고/또는 신체적인 괴롭힘의 가능성을 피하도록 당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다.
The Street Harassment Project (1999~)	우리는 길거리괴롭힘에 있어 그 형태를 남성의 우월주의, **성차별주의**의 표현의 다양한 형태라고 느끼고 궁극적으로 **공공활동을 위협하는 여성에 대한 탄압의 형태**라는 것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은 길거리괴롭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여성, 유색의 여성, 그리고 레즈비언이라고 인지되는 여성 등 이러한 몇몇 집단의 여성들은 편견을 반영한 길거리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고 손댈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남성의 내재된 본능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Stop Street Harassment (2008~)	**젠더에 기반한 길거리괴롭힘**은 원치 않는 비평(comments), 제스쳐 (gesture), 그리고 **동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stranger)**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길거리괴롭힘은 피해 대상의 **실제 또는 인지된 (perceived) 성별, 젠더, 젠더 표현 또는 성적 지향을 겨냥**한다.

위의 표에는 삽입하지 않았으나, 티파니 헤벤 (Tiffanie Heben, 1994)[5]은 길거리괴롭힘을 그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의 카테고리[6]로 분류하였다.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부터 최고까지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폭력의 위계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쳐다보기', '젠더를 이유로 여성을 모욕하는 것', '따라가기, 물건 던지기, 꼬집기, 찌르기 등의 신체적인 행동들' 등 매우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 목록들을 작성하여 길거리괴롭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길거리괴롭힘에 대해 공통적으로 꼽는 점이 있다면 가해자가 **'모르는 타인'이라는 점과 길거리 및 공공장소 등 타인과의 대면접촉이 잦은 곳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행위의 특징과 의**

5) A Radical Reshaping of the Law: Interpreting and Remedying Street Harassment
6) 가장 심각함: a) 성적으로 분명하게 여성의 몸이나 성적 행동을 언급하는 것, b) 여성의 젠더 때문에 여성을 향해 모욕을 겨냥하는 것, c)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비방과 함께 이러한 카테고리들에 해당하는 모든 비평, d) 여성의 동성애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다음의 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비평, e) 따라가기, 물건 던지기, 꼬집기, 찌르기 등의 신체적인 행동들. 중간정도의 심각함: a) 성적 빈정거림, b) 여성의 젠더 또는 성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몸에 대한 언급. 최소 심각함: a) 응시, b) 휘파람, c) 남성이 하는 여성에 대해 필요 없거나 정치성이 아닌 모든 비평.

미는 성적대상화에 기반한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동성애혐오, 트렌스젠더혐오, 이슬람혐오(종교에 따른 차별), 계층 차별, 비만혐오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괴롭힘으로 점차 범위가 넓혀졌다.

결국 길거리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차에 의한 폭력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소수자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이다.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은 남성 (몇몇 단체들의 정의에서는 아예 가해, 폭력의 주체를 남성으로 지목하기도 한다.)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개념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피해자 또한 생물학적 여성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동성애자 남성이 겪는 괴롭힘 문제도 현재 중요한 실태로 보고되고 있고 활동에서 다뤄지고 있다.

또한 길거리괴롭힘은 경험자가 어떤 소수자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해지는 폭력의 종류나 양상이 전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흑인 여성에게는 성적 대상화와 함께 인종비하적 언행, 레즈비언 여성에게는 외양이나 커플 관계 표현에 대한 비난과 간섭이 주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정리하자면 이 개념은 가해자 또는 가해 행위에 기준을 두기보다 INCITE!의 정의처럼 경험자의 감정과 판단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 경험자가 얼마나 대상화되고 위협받고 공격당했다고 판단하느냐가 괴롭힘을 정의하는데 시작이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예시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부는 행동 같은 것은 한국 사회에는 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해 행위나 공포감을 느끼는 경험 등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정서, 문화적인 측면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빙 고프만(1966)이라는 사회학자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다루면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서로 잠시 시선을 맞췄다 피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을 '시민적 무관심(civil inattention)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7] 존재를 인식함을 내비치면서도 낯선 사이에서 서로 거리를 두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바른 무관심'의 표현이다. 고프만은 이를 대면상황과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상호작용이자 존중의 행위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길거리괴롭힘의 문제를 이 시민 상호 간에 예의바른 무관심이 깨지는, 불평등한 상호작용의 발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길거리괴롭힘은 사소하고 불쾌한 '진상짓'일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성의 수준에 질문을 던지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젠더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생김새가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또는 '여성', '남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여 불쾌한 시선을 보낸다거나 호기심이라 믿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태도들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의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간에 적당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앞서 서술되었던 가드너(Carol Brooks Gardner, 1995)의 정의에서도 강조됐듯,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응당 지켜져야 할 '관례적 정중함', 예의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규약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과 경험에서 예의와 존중의 문제가 시민성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7) Erving Goffman(1966), Behavior in public pl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s, Free Press.

3) 연구방법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2015년 2년간 상담통계 분석**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 약 2,700여건 중,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성추행, 성희롱,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기타 등, 총 5개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인 123건에 대한 상담일지에서 피해자, 가해자의 연령, 피해 장소, 행위유형과 대응에 관한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넌진상(Jinsangroad)' 홈페이지 사례 제보 분석**

2015년 4월~2016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성차별, 트랜스젠더혐오, 동성애혐오, 성별표현간섭, 성추행, 폭언, 언어적 성희롱, 쫓아오기, 시선 몸짓, 촬영, 성기노출, 기타 등, 총 12항목에 해당하는 자발적 제보 210건에 대해 분석하였다.[8]

● **성소수자, 이주, 장애, 십대 여성 관련단체 활동가 집단면접**

본 연구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성소수자, 이주, 장애, 십대 여성과 관련하여 당사자성을 갖고 관련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섭외하여 2016년 8월 25일 집단면접을 1회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특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집단면접 참여자 특징

구분	특징	구분	특징
사례 A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	사례 B	이주여성 인권단체 활동가
사례 C	장애여성 인권단체 활동가	사례 D	십대여성 인권단체 활동가

8) 210개의 사례는 '넌진상(jinsangroad)'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례의 번호 순서에 따라 각각 1~210번 사례로 표기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본문 Ⅲ. 제보사례분석에서 제시한다. 넌진상 주소는 주석 2 참조.

2 상담통계 분석

A

선행연구 통계로 본 길거리괴롭힘의 '일상성'

〈표 3〉 연도별 상담통계 (2014~2015)

관계 / 연도	아는 사람 1,110(85.0)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7(14.2)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2015년	166 (12.7)	21 (1.6)	336 (25.7)	135 (10.3)	42 (3.2)	72 (5.5)	55 (4.2)	150 (11.5)	23 (1.8)	80 (6.1)	11 (0.8)	19 (1.5)	119 (9.0)	79 (6.0)	1,308 (100)
2014년	107 (7.4)	94 (6.5)	300 (20.7)	130 (9.0)	55 (3.8)	118 (8.1)	60 (4.1)	120 (8.3)	31 (2.1)	109 (7.5)	19 (1.3)	31 (2.1)	132 (9.1)	144 (10.0)	1,450 (100)

* 관계 미상 상담의 경우, 내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거나 사설기관, 법률전문인, 수사기관, 개인적 해결 등의 다양한 해결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상담에서 묻기보다는 본인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구체적 질문을 간단히 묻는 내용이 많았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80~85% 남짓으로 거의 일정한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드러난/드러낸' 성폭력 피해가 가족, 직장, 학교, 친밀한 관계 등 사회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인권단체들은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과 관련된 무수한 기존 통념들을 비판해왔고, 실제 성폭력의 발생조건이 성별, 가족이나 직장 내의 위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데 주력해왔다.

계급/계층으로서 '여성' 경험의 공통성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시화하는 것은 분명 고립된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여성' 정체성에 기반 한 폭력 이슈는 더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은 반드시 친밀한 관계, 아는 관계에서만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해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닌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공격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자주 경험한 나머지, 또는 괴롭힘 문화가 만연한 나머지) 평범한 일상으로 느껴져서' 드러나지/드러내지 않았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개 국가, 71개 도시에서의 길거리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할러백(Hollaback, 2014)[9]의 미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절반의 여성과 1/4 남성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경험자가 발생 장소를 회피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등의 영향이 나타났다.

할러백은 한국에서도 40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113건의 사례를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sns로 제보받아 분석한 바 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80%이하의 여성이 17세 미만의 연령에서 처음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하며, 68%의 여성이 15세 미만의 연령에서 처음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한다. 조사대상 여성의 14%가 10세 미만의 아동이었을 때 첫 괴롭힘 경험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중 40%가 괴롭힘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80%는 여성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10]

9) http://www.ihollaback.org/
10) 코리아헤럴드, "Hollaback! rallies against harassment(할러백! 괴롭힘에 대항하다)", 2013년 12월 10일자,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31210000585&md=20131213004617_BL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지하철 성범죄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심현정(2013)[11]은 조사대상자 약 20%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성희롱,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 경험이 있었다면서, '화려한 옷차림' '남성이 많은 장소를 회피하기' 등의 경험자의 요인이 범죄발생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심현정은 특히 경험자의 심리적 변화에 주목하는데, 지하철 성범죄 경험은 이후 추가적인 시간의 소요, 지하철 이용 시 부가적인 노력과 함께 '주위를 경계'하고, '신체를 가리'고, '경미한 접촉에도 민감'해지거나, '촬영 소리에 민감'해지는 등의 심리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성차별을 여성의 길거리 괴롭힘, 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성범죄 피해 경험의 빈도와 심리적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각자의 사회적 위치, 장애 여부, 성소수자여부, 연령 간의 차이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공통성에 주목할수록, 연령에 따른, 그리고 장애, 이주, 성소수자 여부 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는 킴벌리 크랜쇼(1993)[12]의 지적은 2016년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장소에서 보여지는 여성, 성소수자의 지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길거리괴롭힘' 경험을 토대로 여성과 성소수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통제하는 기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한 여성으로 묶이지 않는 여성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성소수자 정체성, 이주자, 장애와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 지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심현정(2013), "지하철 성범죄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2) Kimberle Crenshaw(1993),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또한 본 연구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겪는 성희롱, 성차별 등 일련의 기존 성폭력 개념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시선, 몸짓처럼 어떤 범주 안에 포섭시켜야할지 명명되지 못했던 사례에 대한 가시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에서도 성폭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더라도 어떠한 유형으로 명명해야 할지 불분명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성폭력 '기타' 또는 '미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길거리괴롭힘 실태조사는 이러한 '기타'와 '미상'사례에 이름짓기(naming)을 하기 위한 첫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이 공적장소로, 또는 다른 사적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접근하는 통로로서, '길거리', 누구나 일상생활 중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공공장소'에서의 경험을 우선 다루고자 한다.

B

상담통계[13]로 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 경험자, 행위자의 현황

제보사례와 FGI 분석에 앞서, 상담통계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성폭력 상담일지

13) 상담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2015년 성폭력 피해 상담일지를 분석한 것이다. 상담일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로만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경험을 호소하는 경우에 상담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단지 자신과 일면식이 없을 뿐, 확인할 수 있는 행위자 특징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경험자들은 당시의 가해자의 특징에 대해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들', '중년 남성', '어떤 할아버지가' 라는 식으로 성별, 연령, 그 외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사후적으로 행위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 가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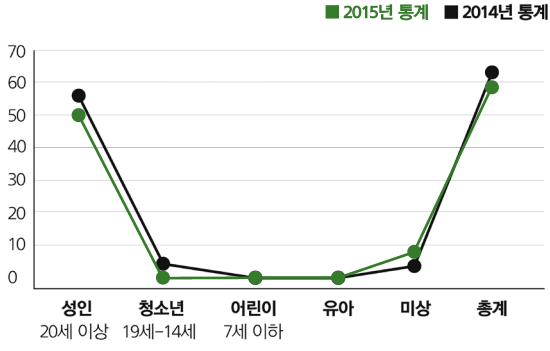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성별, 연령 등에 대한 특징을 경험자가 묘사하였거나, 사후적으로 가해자의 정보를 파악하였음에도 여전히 일지 상으로 가해자 '성별, 연령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은 정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행위자 미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경험자가 신고전이라 신원확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경험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혀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험자가 묘사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반영하여 파악

한 행위자의 성별,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상담통계만 놓고 보자면 가해자의 대다수가 성인 남성이다(십대 남성은 5건으로 전체 중 4%). 성인 가해자들 중 30~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인 경우는 18%(21/116건)이었다. 일지 상으로 가해자의 연령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성인 가해자 중 64.7%(75/116건)가 여전히 '미상'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하면, 중년 남성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경험자(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4	50	5	5	0	1 (가해자상담)	61
	2015	49	0	1	1	2 (가해자상담)	53
남	2014	1	2	0	0	0	3
	2015	5	0	1	0	0	6
총계		105	7	7	1	3	123

* 경험자(피해자) 미상은 주로 가해자 상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교육을 의뢰하는 경찰(대리인)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5〉 행위자(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4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남	2014	56	4	0	0	4	64
	2015	50	1	0	0	8	59
총계		116	5	0	0	12	123

* 행위자(가해자) 미상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대리인 상담이거나, 느닷없는 공격에 가해자의 신원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상 건 중에서 처음에 가해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신고와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가 많았는데, 수사를 통해 신원확보된 건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확인이 가능한 건은 각 표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2) 장소에 대한 현황

〈표 6〉 성별에 따른 피해 장소 (단위:건)

성별 \ 장소		길거리	대중교통	찜질방/목욕탕	술집	클럽	화장실	엘리베이터	놀이터	기타
여	2014	23	9	2	3	3	12	3	1(아동)	5
	2015	16(MTF)*	13	5	4	4	3	0	0	8
남	2014	1	0	2	0	0	0	0	0	0
	2015	3	0	2	0	0	0	0	1(아동)	0
총계		43	22	11	7	7	15	3	2	13

* 주로 여-남 구도로 성폭력 사건을 파악하는 통념에 따라 동성 간 피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성소수자의 성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상담사례도 발견되었다. 특히 MTF 트렌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 표기한 것은 단순한 표기 오류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성별이분법에 따른 젠더 표기와 같은 사회적 통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일지에 표기된 성별에 따라 빈도수를 확인하였으나, MTF를 '여성'이자 소수자의 사례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표 7〉 행위 유형에 따른 피해 장소 (단위:건)

성별 \ 장소		길거리	대중교통	찜질방/목욕탕	술집	클럽	화장실	엘리베이터	놀이터	기타	합계
추행	2014	20	8	3	2	2	4	3	1	2(가해자차1/노래방1)	45
	2015	17	11	6	4	4	0	0	1	2(공공장소2)	45
성희롱	2014	2	0	0	0	0	0	0	0	1(댓글)	3
	2015	1	0	0	0	0	0	0	0	1(식당)	2
폭언	2014	0	0	0	1	0	0	0	0	0	0
	2015	0	1(배)	0	0	0	0	0	0	0	1
촬영	2014	1	0	0	0	1	5	0	0	1(학교도서관)	8
	2015	0	1	1	0	0	1	0	0	3(가해자차/공동샤워장/학교)	6
스토킹	2014	1	0	0	0	0	0	0	0	1(카페)	2
	2015	0	0	0	0	0	0	0	0	2(카페/학교부터 시내까지)	2
성기노출	2014	0	1	1	1	0	0	0	0	0	3
	2015	1	0	0	0	0	1	0	0	0	2
훔쳐보기	2014	0	0	0	0	0	3	0	0	0	3
	2015	0	0	0	0	0	0	0	0	0	0
기타	2014	1(폭행)	0	0	1	0	0	0	0	0	0
	2015	0	0	0	0	0	1(강간미수)	0	0	0	1

● 여성은 다양한 장소, 남성은 주로 신체적인 자기방어가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

〈그림 2〉 성별에 따른 피해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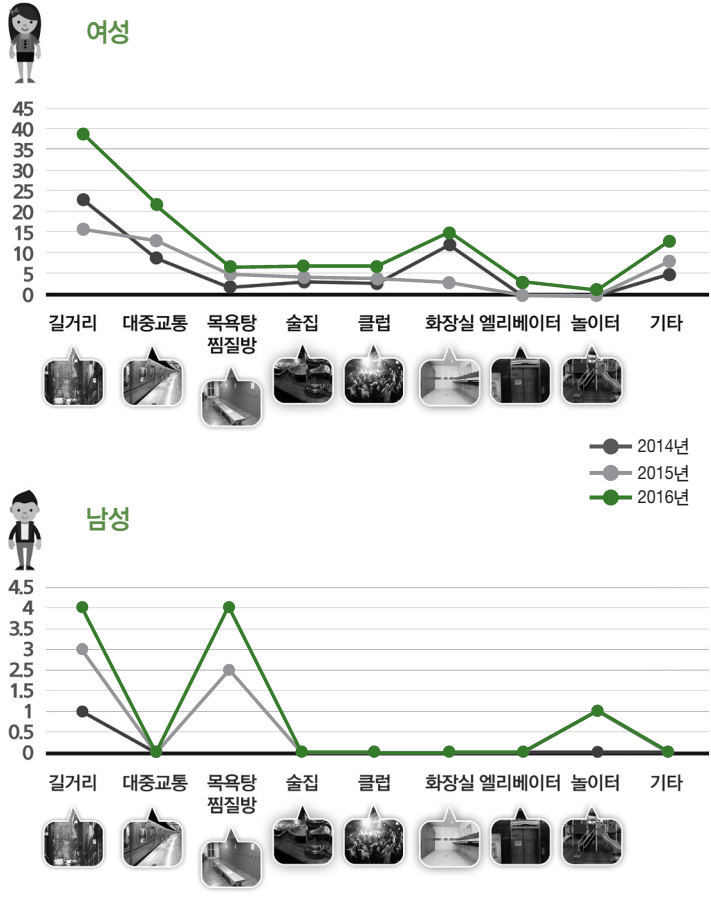

피해 장소를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로 길거리, 대중교통에 집중이 되어있기는 하나, ㈜화장실, 술집, 클럽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길거리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사우나 또는 찜질방처럼 신체가 노출되어있거나, 수면 중이어서 자기방

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길거리나 대중교통 외의 장소를 살펴보면 노래방, 가해자의 차 안, 인터넷 댓글, 도서관, 카페, 식당, 학교, 해변, 기타 공공장소 등으로 경험 장소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차안에서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늦은 밤 시간, 길거리에 혼자 있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14] 그녀들은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인 줄 알고 탔다가 차 안에서 추행, 또는 촬영 피해를 경험하였다.

● **사회적 소수자라서, 또는 소수자가 되는 경험**

주목할 만한 것은 길거리에서 남성이 겪는 피해 사례로, 성인의 경우에는 새벽시간 술취한 사람이 20대 젊은 의경에게 시비를 걸며 성기를 손으로 잡아 쥐어 추행한 사례이다. 다른 건은 피해 당시 중학생인 십대 남성이 신원미상의 불특정 성인남성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유인당하거나, 집 앞 도로에서 추행을 겪은 경우이다.

다른 신체부위가 아닌 남성의 성기에 대한 추행/폭행행위는 남성성 상실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남성들의 통제력, 지배력 등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과시일 뿐만 아니라, '약해보이는' 남성들에 대한 공격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성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길거리괴롭힘이 단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몸, 취약한 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분류해내고' '대상화하여' (성적으로)괴롭히는 행위로서 피해자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언행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늦은 밤 '여성인 줄 알고'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14)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과 태도에 대한 향후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을 넣어 추행하다 “여자가 아니네, 여자가 아니니까 신고 못하겠네”라며 폭언하는 것을 경험한 MTF 사례도 있었다. 상담일지 상으로는 1건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창구도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가 가시화되기 더욱 어려운 지점을 시사한다.

3) 상담통계에서 나타난 행위유형별 현황

● **공공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유형, 추행**

〈그림 3〉 장소별 행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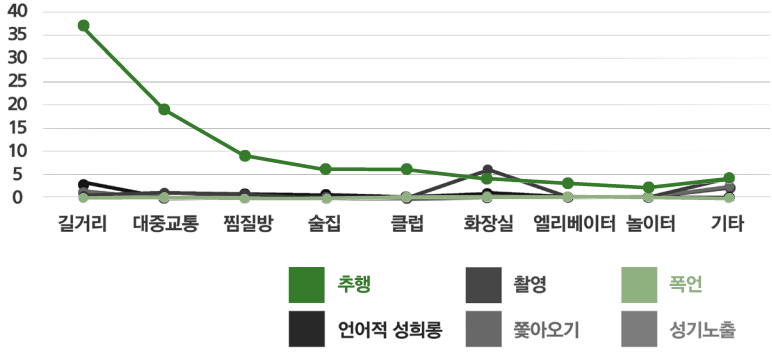

상담통계 상으로 가장 높게 드러나는 행위는 추행이다. 추행은 우선 다른 행위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측면이 있다.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즉시 ‘폭력’또는 ‘괴롭힘’ 행위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행은 비교적 명확하게 신고가 가능한 범죄유형이다. 특히 강제추행은 형사법 체계 안에서도 성폭력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행 피해가 통계상 가장 높은 이유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길거리 추행을 경험하거나 목격, 타인의 사

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신고, 상담, 지인과의 의논을 통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높게 반영되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4〉 추행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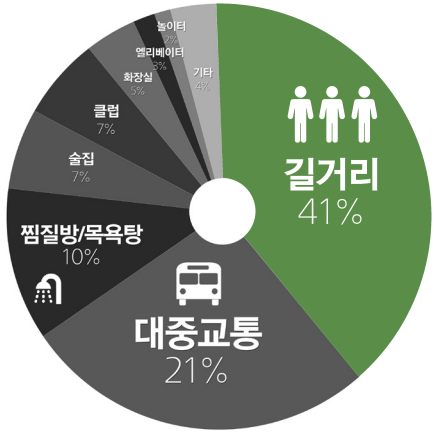

추행은 주로 길거리, 대중교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길거리의 추행이 밤시간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인 경우는 27%(10/37건)에 불과했고, 아침 출근길에서 집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3건, 점심시간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던 길 1건이 있었고, 주로 하굣길, 퇴근길 등 귀가를 위해 이동하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시간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40%(14년 8건, 15년 7건 14년 8건, 15년 7건, 총 37건 중 15건, 37건 중 15건)였다. 십대 여성, 여아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경우는 등 하교길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생활 도중인 경우(4건)가 밤늦은 시간 길거리(3건)에서 접근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내부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부터 피해자의 집 인근까지 따라와서 피해자 집 앞 골목길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혼잡한 틈을 타 범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 그럼으로써 마치 무고한 가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는 일부 언론[15]들의 태도와 달리, 상담 사례에서는 전혀 혼잡하지 않은 '(개인 좌석이 있는)고속버스나 기차'인 경우가 많았고(35.7%, 14건 중 5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이더라도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거나,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가져다 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뒤를 이어 찜질방, 목욕탕 등에서 자고 있는 도중에 피해를 겪는 경우도 10% 정도 보고되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피해는 찜질방, 목욕탕 등의 장소인 경우가 높았다.

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동네 놀이터에서 낯선 성인,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동 청소년은 하굣길, 학원을 다녀오는 길 등에서 교복을 입거나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등, '학생' 또는 '연령' 정도를 상대방이 인지하거나 추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 피해가 높았다.

'대로변'에서 느닷없이 엉덩이를 움켜쥐고, 깜짝 놀라서 쳐다본 여성을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고', 이 여성이 "무슨 짓이냐"고 하니 그제야 도망을 간 사례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앞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서야 '합의를 요청'하거나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사례에서도 도망

15) 헤럴드경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지하철 성추행,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발생 빈도 높아" 2016년 1월 18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8000288 한국일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쉬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2015년 6월 25일자, http://www.hankookilbo.com/v/0d79e7473cf342299d0efa9bcf1709ac

가는 가해자를 쫓아갔다가 오히려 힘으로 제압하려는 가해자를 피해 피해자가 도로변으로 소리치며 도망을 갔고, 상황을 지켜본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체포하여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는 경찰을 통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사례의 여성은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고 싶거나, 더 이상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나이어린' 여성에 대한 중층적 차별 유형, 언어적 성희롱**

〈그림 5〉 언어적 성희롱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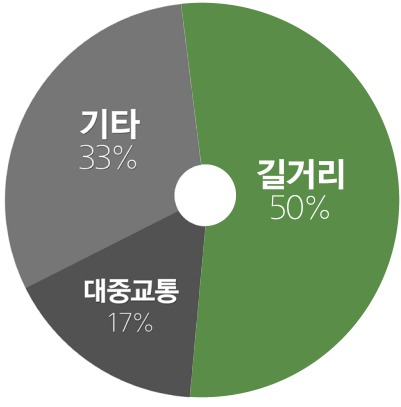

찜질방, 목욕탕, 술집, 클럽, 화장실, 엘리베이터, 놀이터 0%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은 주로 '나이든' 남성이 여성에 대해 '(경험자와)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등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유형이 많지만,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쪼끄만 년' 이라고 폭언을 하는 것처럼, 언어적 성희롱은 결국 '나이어린' 여성을 만만하게 보는 중층적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새벽 시간에 '나이어린' 여성이 길에 서있다는 이

유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대상' '성적 요구를 해도 무방한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 역시 늦은 밤 길거리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뿐만 아니라, 교복과 같은 복장, 외모를 통해 연령에 대한 인식이나 추측이 이루어진 순간, '나이어린 여성'을 만만하게 보려는 연령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하여 반드시 경험자의 성적 수치심과 같은 정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짧은 머리를 한 경험자(피해자)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여자 맞냐, 머리는 왜 짧냐, 가슴은 있냐"며 젠더표현에 간섭하는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경험자는 자신의 '여성답지 않은' 외모를 지적하고 비웃는 행위자에 대해 수치심과 모멸감보다는 이러한 '무례한 언행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형사처벌'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법률중심의 이분법과 '수치스러워하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상에 대한 통념이 결합하여, 경찰은 사건 접수과정에서 행위자의 '성희롱' 호소를 '경미한 피해'라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축하기 쉽다. '모욕' 등 기존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상황을 만류하던 주변인과 가해자 간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 가해여부가 경찰에서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 맥락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성희롱 경험자들은 성폭력으로의 '처벌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경찰이나 상담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성희롱 처벌규정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 향후 대응과 대책을 의논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상황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이 나섰다가, 또는 당사자가 직접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가해자와 물리적인

시비가 붙은 경우, '폭행' 등의 다른 죄목으로라도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건을 인지하고 성폭력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 **가장 가시화하기 어려운 유형, 카메라이용촬영**

공공장소에서의 동의 없는 카메라이용촬영(이른바 몰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글에서 '길거리'라고 입력하면 치마 입은 여성들의 하반신에 초점을 맞춘 사진들이 이미지 검색을 가득 채운다.

2016년 초, 최대 음란물 유통망인 소라넷이 폐쇄되기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5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보사례를 받고, 피해 사건지원을 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지만, 실제 피해 당사자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지인이나 가족이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을 '우연히' 확인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주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포 협박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더라도

〈그림 6〉 촬영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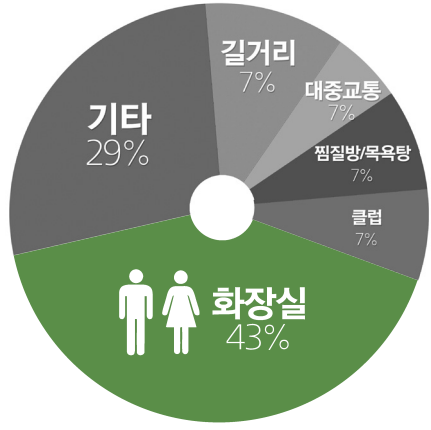

가해자가 즉시 도주를 하거나, 가해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촬영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의 촬영장면이 주위 cctv에 찍혀있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경찰의 답변으로 인해 경험자들은 불안감과 분노가 더욱 높아졌다. 증거확보는 물론 촬영물 유포 등 자신의 추가적인 피해 또한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은 주로 화장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형태가 많았지만(43%), 대중교통 안에서 잠들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여성의 다리 사이에 폰을 가져다가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처럼 연령이 어린 여성에게 '학교 과제를 도와달라'며 접근하여 '자세를 취하라'고 하거나, '함께 사진찍자'며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두려운 마음에 응해준 사례처럼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촬영 피해는 반드시 '몰래'카메라 유형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 시간과 장소 구분이 따로 없는 유형, 성기노출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기노출'은 상담통계에 따르면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다. 시간별로 큰 차이가 없이, 길거리, 대중교통, 찜질방이나 공중목욕탕, 화장실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상대방에게 볼 것을 요구하거나, 자위를 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성기노출은 반드시 '학교 주변'의 나이어린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승객을 지켜보면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중목욕탕 남탕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남성도 있었다.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 (연령과 무관하게 대상이 누구든지)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칸 밖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술집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모르는 여성을 향해 행위자

〈그림 7〉 성기노출 발생장소

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여기 내 문신을 봐라'며 볼 것을 요구한 경우에서는 술집 역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빈번하게 괴롭힘을 경험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대응 방식

〈표 8〉 상담 전 대응 (단위:건)

유형 \ 조치		법적 조치		사적조치			현장 대응 안함	기타
		경찰 신고	타인이 경찰신고	항의/거절 /사과요구	녹음,촬영 등 증거자료확보 (중복)	가족, 친구 등과 의논		
추행 (45/45)	2014	29	2(가해자)	1(신고제외)	4	6	5	2(1366/미상)
	2015	32(폭행2)	1(타 범죄)	3(신고중복)	1(신고중복)	2	8	2(미상2)
언어적 성희롱(3/3)	2014	2	0	0	0	1	0	0
	2015	1	1(가해자)	0	0	1(폭언)	0	0
촬영 (8/6)	2014	6	0	1	0	1	0	0
	2015	4	0	1	1	0	0	0
스토킹 (2/2)	2014	1	0	1	0	0	0	0
	2015	2	0	0	0	0	0	0

성기노출 (3/2)	2014	3(폭행1)	0	0	0	0	0	0
	2015	2	0	0	0	0	0	0
훔쳐보기 (3/0)	2014	2	1(가해자)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기타 (0/1)	2014	0	0	0	0	0	0	0
	2015	0	1(목격자)	0	0	0	0	0

〈그림 8〉 상담 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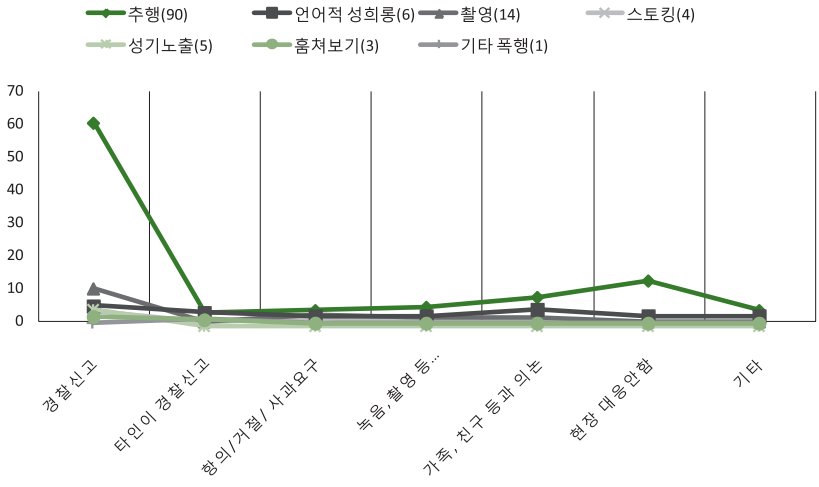

● **높은 신고율**

상담통계로 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신고율은 매우 높다(68%, 84/123건). 그러나 이는 상담 이후에 신고를 결심한 경우는 아니었다. 84건 모두 이미 신고를 한 뒤에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청' 등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물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에 비해 신고를 결심하기가 용이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법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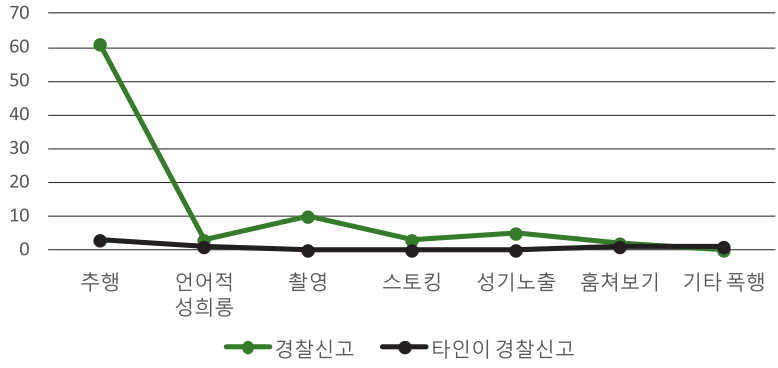

시비가 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폭행 또는 강간상황으로 보고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상황에 개입한 주변인과 가해자가 시비가 붙어 폭행 건으로 경찰에 신고접수하게 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서를 방문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공공장소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는 "무슨 짓이냐"며 즉각적인 항의와 사과요구를 하면서 신고를 염두에 두고 직접 녹음 등의 증거마련과 상대방의 신원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사과요구와 항의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2건)가 있었고, 항의하는 여성에게 가해자가 오히려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고를 감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의 여성은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녹음을 하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신고를 감행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은 주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성인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고 현행범으로 입건된 경우가 많았다. 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다 가해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우도 상당했다. 항의와 저항에 대해 '만지지 않았다'며 발뺌하거나, '증거 있

냐', '무고나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등의 괘씸한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들의 태도로 인하여 '그냥 넘어가려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았다.

신고를 한 경우에 가해자가 경찰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14건으로, 이 경우에 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더욱 분노하거나, 합의의사를 대신 전달한 경찰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합의에 응한 이유로는 '경험자가 미성년자라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초범이고 장애가 있다고 하여', '피해 장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지방이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으로 나타났다.

●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이유**

여기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할 만한데,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고의 여부가 불분명해서(2건)', '놀라거나 멍해져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2건)'는 경우가 있었다. '(경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 가해(자)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여서(2건)', '남편에게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1건)'도 있었고, 목격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방관했던 경우(1건)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지인이 사후에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신고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당시 주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 경찰 역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신고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였다.

주변인들이 도망가는 가해자를 목격하거나 함께 체포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한 사례는 2014년 12건, 2015년 3건, 전체 84건 중 15건(17.9%)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당시 동행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여 신고한 경우였다.

따라서 상담통계상으로 경험자 스스로 신고를 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만으로 경험자들의 즉각적인 신고율이 통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황에서 주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전적으로 혼자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피해의 정도

● **심리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할러백(2014)에 따르면, 길거리괴롭힘 이후에 경험자들은 '다니던 길을 우회하거나 변경(68.49%)', '교통수단의 변경(62.5%)', '늦은 밤 외출을 회피(61.64%)', '특정 지역을 회피(54.79%)', '복장 스타일을 바꿈(52.78%)' 등의 순으로 행동 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직장을 떠나(6.94%) 거나 결근(8.22%)'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도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니던 직장 근처에서 피해발생 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의 추행 사례에서는 피해 이후 비슷한 폭력을 되풀이하여 경험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였다. 특히 신고 후 가해자가 동네 주민임을 확인한 뒤 동네에서 또다시 마주칠 것에 대해 공포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보복과 재범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등하교길이나 출근길, 아침시간 집 앞에서 피해가 있었던 경우 등은 성인이 된 뒤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당시 등굣길 학교 앞 대로변에서 피해가 있었던 사례에서는 목격한 교사가 즉시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신고접수 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수년간 조울증 약을 복용해야했으며, 섭식장애를 호소하였다.

● **주변인의 무반응과 2차 피해**

지하철 추행 경험 후 사건에 대해 한 상담사와 의논했는데 "너가 예뻐서 그런 거다. 잊어라. 그게 사회생활이다"고 해서 당황스럽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는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누군가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의논을 하더라도 사건을 경미하게 바라보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주변인들의 태도에 실망, 분노감을 느낀 경우도 많았다.

카메라이용촬영(몰카) 피해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 노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타인의 피해를 뉴스에서 보고 난 뒤, 사건 범행장소와 유사한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미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를 확신하는 경우, 자신을 촬영한 가해자 신원확인을 즉시 하지 못하였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자신의 피해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불분명하면)신고해도 소용없다', '증거가 불확실해서 수사진행이 어렵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지적하거나, 치안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였다. 가해자의 촬영행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3 제보사례 분석

A 제보사례 개괄

다음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 10일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넌진상(Jinsangroad)'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제보사례 총 210건 중, 길거리괴롭힘 사례에 해당하는 186건[16]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유형별 (단위:건)

유형	성추행	시선 몸짓	성 희롱	성기 노출	폭언	쫓아 오기	동성애 혐오	성차별	젠더 표현 간섭	촬영	장애 혐오	기타	트랜스 젠더 혐오
빈도수	46	45	44	18	15	15	11	10	8	3	2	2	2

유형에 따라서는 성차별 해당 사례 10건, 언어적 괴롭힘(성희롱) 44건, 폭언 15건, 쫓아오기 15건, 젠더표현 간섭 8건, 트랜스젠더혐오 2건, 동성애

16) 210건의 사례 중, 의료적 진료 중 의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1건(81번),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와 동급생에 의한 성희롱, 추행 피해 3건(82, 83, 200번), 대학 내 동급생에 의한 성희롱 1건(72번) 대학 내 기숙사에서 행정직원에 의한 성차별 발언 1건(10번), 직장 내 동료 등에 의한 성희롱 성차별 발언 6건(2, 13, 18, 119, 133, 145번) 친족성폭력 1건(136번), 구체적 정보의 부족으로 본 연구가 정의하는 길거리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사례 3건(126, 194, 206번), 한국 음주문화에 대한 비판, 여성의 수다에 대한 편견 비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에 대한 비판, 직장내성희롱 비판 등의 단순 의견 개진 7건(7, 25, 128, 129, 167, 205, 207번), 길거리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이나 사례 활용 거절을 요청한 1건(187번)을 제외한 숫자이다. 이 중 중 고등학교 이하 연령에 대한 동급생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은 길거리괴롭힘 최초 경험 시기와 유형 분석을 위해 세부분석에는 참고하였다.

혐오 11건, 장애혐오 2건, 시선 몸짓 45건, 촬영 3건, 성기노출 18건, 성추행 46건, 기타 2건(버스 안에서 남학생이 하차하면서 여학생의 '포니테일(하나로 묶은 머리)'을 앞문에서 뒷문까지 끌고 간 사례, 지나가는 남성이 여성의 귀에 바람을 불고 간 사례)로 나타났다.

장소에 따라서는 대중교통과 길거리 2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74건, 길거리 102[17]건, 기타 9건(중고등학교 5건, 경찰서 1건, 미상 3건)이다.

〈표 10〉 장소별 (단위:건)

장소	대중교통	길거리	기타
건수	75(40%)	102(55%)	9(5%)

가장 높게 나타난 추행의 경우, 주로 붐비는 지하철, 만원버스 등 혼잡한 틈을 탄 범행일 것으로 추측하기 쉽다. 실제로 제보사례 중에 대중교통과 길거리에서의 유형은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꽉 움켜쥐거나 스치면서 지나가는 경우처럼 '손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19건, 괴롭힘 행위자가 발기된 성기를 가져다 대거나 몸을 갖다 대는 경우 등, '강제로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행위'는 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붐비는 틈을 탄 범행은 전체 58.7%(46건 중 27건)로, 절대 다수인 것은 아니다.

별다르게 붐비지 않는 지하철 안에서 중 고등학생들로 추정되는 10대 남학생들이 '여성의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풀기'를 모의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례, 초등학생 때 단체로 걸스카웃 캠프를 가는 배 안에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예쁘다'며 다리를 쓰다듬은 사례도 있었다. 다음 제보사례 세부분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가해자들

17) 상점(빵집, 찜질방, 편의점 등), 동네 도서관 등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는 공공장소로서 길거리에 포섭시켜 정리하였다.

은 주로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대상에게 '혼잡함' 여부와 관계없이 '당당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 길거리의 경우에는 추행 17건 중 14건이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나타났다. '대로변'임에도 전혀 '은밀하거나' 우연을 가장한 접촉이 아니라, 특정 신체부위를 '정확하게' 만지거나 잡는 행위였다는 사실에 경험자들은 더욱 분노와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아동기 경험으로, 모르는 아저씨가 길에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상황을 겪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너가 예뻐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더욱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추행은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당당한' 범행의 형태를 띠지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험일지라도) 쉽게 주변인으로부터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제보사례 세부분석

1) 누가 괴롭히는가? : "아저씨", "할아버지", 무리지은 남성들, "아줌마"

>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어이 학생~ 학생은 왜이렇게 가슴이 작나~~? 남자 아니야~?" 이러시면서 가슴을 툭툭 치셨어요... (사례 78)

> 느닷없이 **약간 술 취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는 알레르기가 있다며 내게 계속 소리를 지름.(사례 79)

나는 지난여름에 집에 가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위아래로 노려보며 마구 씩씩댄 경험이 있다. (사례 3)

집에 가는 길에 지나가던 **남고생 세 명**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고생들이 "뭘 보는데 씨X년아." 하더니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절 보며 "오, 궁디 큰데?"라고 하더군요.
(중략)
친구랑 같이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둘이 재밌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들**이 "오크년[18]들이 길막는다" "궁디 치아라" 등등 뒤에서 상스러운 말을 뱉는 것입니다. (사례 93)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아줌마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사례 183)

"어떤 아저씨", "50-60대 모르는 남성", "노인", "할아버지", "남학생(들)", "어떤 남자들" "아줌마". 제보사례들이 묘사한 가해자들의 모습이다. 제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성별이 남성이거나, 여럿이 무리지어 있거나. 이 세 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아저씨'라는 사회적 지위는 길거리괴롭힘 주범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50-60대의 연령대에 집중해있고 때로는 40대에서 70대 초반까지를 포괄하며("할저씨"로 묘사되기도 함), 어떤 경우 술에 취해있거나 행색이 남루해보이고, 택시기사나 점포 상인처럼 직업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구체적 상황이나 다른 사회적 특징의 차이를 넘어서는 '아저씨'라는 가해자 특징은 바로 성별과 나이 차/권력이다. 그들은 공공장소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을 "콕 집어"

18) 외모를 비하하여 사용되는 신조어

괴롭힐 줄 아는 사람들이다.

사례 201은 버스에 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바로 옆자리에 20-30대 남성이 있음에도 한 할아버지가 그 남성이 아니라 자신("'여자'이고 '학생'인 제게")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험을 전하며, 자신이 "제일 만만해보였기 때문"에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괴롭힘은 예측할 수 없게, 느닷없이 찾아오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히 예측가능한 대상에게만 향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는 예의없이 소리지르기, 위협하기, 신체 찌르기, 성적 대상화/외모 평가 발언을 하면서 상대에게는 "예의"를 요구하며 대응을 막거나 대응 시 비난과 위협을 심화시키는 방식은 나이에 따른 위계가 보다 분명한 한국적 맥락이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남성 무리라는 가해자 특징은 남성 집단문화이자 놀이문화로 심화되는 괴롭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성적 호기심의 폭력적 표현이 남성다움으로 또래 내에서 인정받는 10대 청소년남성들,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성적 추근거림이나 외모 품평/비하를 무리지으면 쉽게 시도하는 20대 남성들, 같이 있으면 '진상짓'이 더 뻔뻔하고 대담해지는 아저씨들 무리는 공공장소에서 소수자를 먹잇감(game)이자 수단(token)으로 삼아 그들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남성 동성사회(homo-social society) 면모를 보여준다.

> 초등학교 때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서 막대사탕을 먹으며 걸어가는데, **중학생쯤 되어보이던 서너명의 사내들**이 나를 힐끔거렸다. **지들끼리 키득거리며** 쏟아내던 이상한 말들 중에 뇌리에 콕 박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 "내꺼나 빨아주지" (사례 26)

> 저녁 8시경 여수의 한 해변에 앉아 바다를 구경하던 친구와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5명**이 저희 뒤에서 저희에 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그런데

도 그 남자들은 저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희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해대며 **낄낄거렸습니다.** 급기야는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저희를 둘러싸고 심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사례 16)

여자인 친구와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먹으려고 했는데 **술 취한 아저씨 3명**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길을 막고 있어서 "잠깐만요(비켜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비켜주고 나서 뒷통수에 대고 "와~ 이걸 확 때려죽일 수도 없고" 라고 말하면서 **낄낄거리더라고요.** (사례 31)

위의 사례들에서 남성 무리들은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함께 "낄낄거리"며 즐거워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전혀 괴롭힘이나 잘못된 것으로 인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얼마나 약자를 더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는지가 남성성 표현이나 집단 내 소통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남성들은 성찰성과 개인성을 잃어가기 쉽다. '엉만튀', '슴만튀'라는 명명처럼 괴롭힘이 하나의 유행어, 유행놀이문화가 되어가면서 자신의 가해 경험을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혼자 하는 가해 행위도 점차 거리낌이 없어진다. 다음 사례 177은 성인 여성에게 어린 남성이 혼자 거리낌 없이 '슴만튀'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 바로 뒤에서 거의 귀에다 대다시피 갑자기 누가 악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 뒤돌아봤는데 **교복입은 갈 봐도 중학생으로나 보이는 자전거 탄 놈**이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네요ㅋㅋㅋㅋㅋ (사례177)

그러나 길거리괴롭힘의 가해자가 성별과 나이 권력을 입은 생물학적 남성 개인이나 남성 무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그 성별이 나이, 집단문화 등의 다른 사회적 요소와 결합해 드러나는 (상상된)권력 차이이자 권력관계이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침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여기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사실 성별에 관계없이 괴롭힘을 할 수 있다. '아줌마'라는 사회적 위치는 섹슈얼리티가 거세된 존재로서 비하,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결혼과 출산/양육이라는 여성에게 부과된 '정상적'인 성역할 수행을 함으로써, 섹슈얼리티와 젠더 표현의 '정상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도 한다. 제보사례들 중에서 동성애, 장애 혐오 발언이나 성별 표현, 외모에 대한 간섭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이 행하기도 하며, 특히 성적 괴롭힘은 아니지만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 신체접촉, 무례함 등은 '아줌마'나 '아줌마 무리'들이 행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 저는 FTM트랜스젠더라 머리가 짧은데 가끔 아우팅이 두려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줌마들은 대놓고 여자 맞아?** 이러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고 싶지도 않다구요...(사례 86)

> 술집 화장실에서 여자인 제게 자꾸만 짧은 머리를 문제 삼으며 '벗어봐라', '남잔데 여자인 척 한다'는 등 폭언과 언어 희롱을 가한 아주머니를 제보합니다. (사례 59)

2) 길거리괴롭힘은 생애사적 경험,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발생한다.

1.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단지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손목잡고 끌고가려고 했던 일.(...)
2. **초등학생 때** 대낮에 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 걸어오던 아저씨가 내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스쳐지나가면서 '좋은데~?'라고 능글맞게 웃었던 일.(...)
3. **고등학생 때** 야자가 끝나고 집에가던 길에 서있던 또래로 보이는 남자애

가 전화통화를 하는척 은근슬쩍 다가와 허벅지를 만졌던 일. (...)

4. 이건 길거리에서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장소니까 포함시킬게요. **한달 전** 동네 도서관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 남자애 둘이 힐끔이면서 오더니 엉덩이를 만지고 갔어요. **(사례 188)**

성폭력에 관한 고전적 저작에서 Kelly(1988)는 여성들의 생애 경험 속에서야 성폭력을 규정하고 특성을 정의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60명의 영국여성들을 인터뷰해 대다수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폭력과 괴롭힘을 겪는다고 밝힘으로써("It's happened to so many women") 성폭력 연속성 개념을 고안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은 기존 언어로 명명하거나 법적 규정이 힘들거나 처벌을 요구하기 애매한 것들도 많지만,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성 지배구조를 확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제보사례들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났다. 한 가지 사건을 적은 제보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제보자들은 "겪었던 몇 가지", "여태까지 거쳐온 사례들"을, 그것도 다 적지는 못했지만("몇 개만 말할게요"), 그 중에서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적었다. "여태까지 겪은 게 너무 많고 다양해서 카테고리를 못 정하겠다(사례 102 제목)"는 표현은 길거리괴롭힘이 일회성 사건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님을, 연속된 다층적 경험으로서 그 구조적 효과를 봐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단지 개별 사건의 총합으로 이야기되거나 접근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정확한 연령대나 인구학적 정보들을 적은 제보자들은 적었지만 문맥 상 제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 30대 여성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최근에 겪은 것 뿐 아니라 "어릴 때", "초등학생 (몇 학년)때", "중학생 때"라는 식으로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괴롭힘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당시 전 학생이었고 친구들과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 놀랐던 듯 합니다. (...) 그날은 기분 좋은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는데 그건 현재 가물가물 한 거 보니.. **그때의 시간만 제 뇌 속에 또렷이 새겨지는 날**이었습니다. (ps이 글을 쓰며 과연 친구들 틈바구니 속 학생이 아닌 **지금 성인이 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때보단** 좀 당돌히 따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귀찮고 무서워서 그냥 둘 것 같기도 하네요.) (사례 51)

고등학생 때 등하교 하는 길에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계단을 오를 때 지쳐서 뒤를 가리지 않으면 저기 보라며 뭐가 쩐다며 쑥덕대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저 길을 걷는 도중에 내 뒷모습을 하나하나 품평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곤 제멋대로 실망하기도 했다. **대체 왜 그 때 그걸 듣고만 있었는지 왜 돌아서서 화를 내지 않았는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사례 163)

위의 제보자들처럼 많은 여성들은 어릴 때 처음 당했을 때의 사건이 무력감, 수치심, 혼란, 당황 등의 부정적 감정과 무기력한 대응을 체험한 계기였기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대처력이 늘고 심리적으로 좀 더 성숙한 '지금의 나'에 비해 어릴 때나 학창 시절의 '과거의 나'는 더 무력하고 대처할 자원이나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릴 때의 괴롭힘 경험은 지금의 나라면 다르게 해석하거나 대처했을 텐데 라는 가정을 불러일으키며 "지금도 생생(사례 93)"하게 계속 생각나는 현재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3) 어디에서 어떻게든 발생한다.

여름이었다. 더위를 못 견디는 나의 여름 외출복은 헐렁한 티와, 무릎 위 5센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굉장히 촌스러운 길이의, 반바지**. (사례 9)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밤에는 좀 다니기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좁은 주택가 골목이지만, 낮에는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 골목**이기도 합니다. 그 길의 중간에, 날씨가 좋을 때면 자기 집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노인 남성이 있어요. (사례 46)

제보자들은 위처럼 당시 자신의 옷차림이나 외모, 아니면 장소의 특성에 대해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옷차림이나 외모는 평범하거나 '후줄근'한데도,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거나 사람이 많거나 어둡지 않은 공간이었는데도 사건이 일어났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묘사는 어둡고 외진 공간, 노출 심한 옷차림이나 '예쁜' 여성에게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성폭력통념이 사건 경험을 통해 깨지는 순간을 보여준다. Kelly(1988)가 분석한 것처럼 괴롭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발생한다("It's everywhere").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 제보자들은 짧은 머리, 흡연 등 정상적 여성성 규범에 어긋나거나, 노출 있는 옷차림처럼 성녀-창녀 이분법에서 '창녀'에 가까운 외양이나 행동을 할 때 빈번해지는 괴롭힘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전하기도 한다. 통념에 부합하는 존재나 특성들은 더 쉽게,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여자는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술에 취한 아저씨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였다. (사례 33)

보통 이런 남자들이 붙는 경우 **딱 달라붙는 상의에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힐을 신은 날**이 많습니다. 쫓아오지 않더라도 끈적하고 더러운 시선이 붙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례 208)

이처럼 후줄근하게 입었든 '야하게' 입었든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옷차림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괴롭힘 경험은 그 원인이 옷차림이나 행동 같은 당한 사람의 외적 특징이나, 특정 장소나 상황을 선택한 당한 사람의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거나 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욕설, 조롱이("너가 맛있어 보여서" 등) 괴롭힘 언행에 부수되거나 심화되기 때문이다. (성)폭력통념과 피해자 비난에 기반한 이런 합리화는 제보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반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통념에 제보자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에 기반한 회상과 상황 설명으로 서사가 조직된다는 것이다.

자주 다니는 길이고, 내가 편해서 다니는 우리 동네 길이고, 더 먼 길로 돌아가거나 눈치보며 노출이 덜한 옷을 입고 싶지 않아서(청바지에 반팔 티셔츠만 입어도 한 마디씩 꼭 해댔지만요.) 화가 났어요. 내가 왜 그런 시선과 그런 말에 위축되어야 하는지. (사례 46)

고등학교, 동복을 입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교복은 치마에 스타킹을 입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날 신어야 하는 스타킹에 구멍이 났고, 다른 스타킹은 빨랫감으로 내놨거나 올이 나가 신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별수 없이 쉬는 시간에 학교 근처 문구점에 들르기로 결정하고 스타킹을 신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늘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난 큰 길을 따라 걸어서 통학했었는데,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몇 번 마주쳤을지 모르는,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을 지나치는데 그분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19)

왜 내가 그 길을 노출 있는 옷차림으로 다녔는지, 왜 내가 스타킹을 신지 않은 채 등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상세한 설명들은 제보자들 역시 피해자와 장소에 관련된 통념에 '매여'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괴롭힘 경험의 사후적 영향이자 효과이지 않을까? 이 경험을 해석할 대안적인 언어가 없기에 통념을 중심으로 반박이나 정당화하는 서술이 이뤄지는 것이다.

4) 폭력의 예감과 소수자성의 실감

김지선(2006)[19]은 여성의 범죄 두려움이 객관적 범죄피해율과 무관하게 높은 것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여성의 실제적인 경험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기에 범죄 두려움은 해석과 의미의 문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사회심리적인 현상이며, 공론장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사실 지금까지 공공장소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나 법률상 명백한 성범죄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객관적 사건 양상 자체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이 여성의 심리와 인식, 행동에 마치는 주관적, 누적적 영향의 측면에서 이는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험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고, '더 큰'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거나 이어질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폭력의 예감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19) 김지선(200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KSI(주).

내가 겉보기에 '여자'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나를 겨냥하여 작든 크든 **범죄를 모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조금 주눅 들고 겁도 먹게 된 것 같다. **바바리맨 자체는 두려움을 주지 않았지만. 괜히 밤길이 달라졌다.** (사례 4)

"왜?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나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다. 그 때 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엄마가 재빨리 뛰어와 내 손을 잡았다. 그 남자는 엄마를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골목으로 나갔다. 만약 그 때 내가 혼자 있었거나, 엄마가 빨리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20대가 된 지금도 종종 생각하면 섬뜩하다.** 그 때는 해가 지지도 않은 낮이었고 으슥한 골목도 아니었으며 난 그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던 초등학생이었다. 그 남자는 아마 **내가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왔을 것이다. (사례 5)

바바리맨의 성기 노출이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도, 엄마의 등장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제보자들에게 이 사건의 영향은 없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로서 언제든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폭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긴 자신의 일상 공간이 위험하고 불안한 공간으로 재인식되기도 한다. 괴롭힘 자체가 '크게' 여겨지지 않더라도 괴롭힘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크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괴롭힘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괴롭힘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막기도 한다.

그걸 보던 중년 남성이 제가 선 곳까지 따라와 자기 몸을 비비길래 가슴 만지지 말라고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손을 슬쩍 밀었더니 갑자기 엄청 아프게 맞은 것 마냥 제가 민 손을 덜덜 떨면서 노려보면서 저한테 쌍시옷 욕을 했습니다. **당장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만 들어서**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계속 그 남성이 밀고 들어와 몸 비비는 걸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사례 139)

강간이 모든 여성을 위협하는 집단 테러리즘(mass terrorism)이라는 급진주의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은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성폭력 두려움의 문제를 제기한다. 강간피해가 모든 여성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잔인한 체험의 본보기로서, 이를 여성 개인의 잘못이자 성적 취약성의 증명으로 해석하는 사회 통념을 통해 모든 여성은 강간을 두려운 것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본다. 지리학이나 범죄학의 경험연구들은 여성이 다른 범죄/폭력피해보다 특히 성폭력피해– 그 중에서도 낯선 남성에 의한 강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현실 하에서 괴롭힘의 경험은 단지 그 자체로 읽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구타나 살인을 동반한 강간을 예비하는 것, 더 큰 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읽힌다. 제보자들의 주관적 인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가해자들 역시 폭언, 쫓아오기, 시선 등을 통해 더 큰 괴롭힘에 대한 위협으로서 괴롭힘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을 예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생생한 기억이자 몸의 체험이다. 여러 제보자들은 과거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며, "결국 아무 일도 없던 거니까 괜찮은 거겠지" 라고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나는 가끔 몸이 떨리(사례 22)"는 몸의 감각을 전한다. 사건이 1회여도 부정적 신체적 감각과 심리적 감정은 반복 지속되는데, 이는 괴롭힘 경험이 체화되어(embodied) 각인되는, 현재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장소에서 체험하는 폭력의 예감은 그동안 가부장제 통제의 기초로서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 현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은 여성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일상생활의 전반적 상황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김지선, 2006)으로, 여성은 성인기 이전부터 여성에게 적절한 의상, 행동, 라이프스타일, 섹슈얼리티와 범죄 및 위험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성별화되고 성화된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생물학적 여성이나 여성 젠더 전체의 단일한 경험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Pain(1991)[20]은 가부장제 통제의 기초로서 공적 공간에서의 두려움 문제는 마이너리티 인종, 성소수자 집단 같은 다른 사회 집단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 계급, 나이, 인종, 섹슈얼리티나 다른 사회적 요소들의 효과로서 여성의 두려움의 정도나 효과는 다르다고 보는 최근의 연구경향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이라 괴롭힘을 겪는다기보다는 여성이란 표지가 사회적 소수자성으로 읽히거나 드러날 때, 그 소수자성에 대한 공격으로서 괴롭힘이 발생한다.

소수자성에 대한 공격은 소수자가 공적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일종의 사회적 규제와 처벌의 효과를 가진다. 공적 공간을 이용하고 그에 참여하는 소수자들의 시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통제모델의 설명을 적용해보자면 길거리괴롭힘은 특정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무례함(incivility: Goodey, 1994)21]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서이자 존중으로서 개인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보여주는 시민적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 때 괴롭힘의 많은 양상은 성적 대상화나 비하의 방식으로 발생한다. 또한 젠더 정체성과 표현이 성적 괴롭힘과 주로 연결된다는 점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성범죄나 현재의 성폭력 정의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괴롭힘 경험이 자신의 소수자성을 실감하는 계기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 소수자성은 주류적 위치와 존재에 대한 '비교'와 함께 인식되는데, 신체(체격 좋은), 나이(나이많은), 성별(남성), 인종(백인)의 주류적 위치에서는 겪지 않을 일임을 괴롭힘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하거나(남자와 같이 다니면 안 겪는다), 가정할 수 있게 된다.

---

20) Pain, Rachel(1991), "Space, Sexual Violence and Social Control: Integrating Geographical and Feminist Analyses of Women's Fear of Crim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4).
21) Goodey, Jo(1994), "Fear of Crime: What Can Children Tell U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3, pp. 195~210.

가슴이 패인 옷을 입었더니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면서 중얼거리던 어르신. 뷔스티에[22]가 유행이라지만 우리나라에선 절대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욕을 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런데 **왜 남자와 같이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걸까요?** 남자친구와 지하철에 타면 아무도 절 쳐다보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한 대 맞을 것 같았나보지? (사례 137)

다른 사람이 제 복장에 간섭했다고 해서 옷을 바꿔 입거나 하루종일 신경 쓸 성격은 아닌데, '만약 내가 **나이 많고 체격 좋은 남성이었어도 그렇게 무례하게 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더라구요. 기분 나빴어요. (사례 92)

지금 ****와 오@언니는 영국에 살지만, 방학 때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공항에서 한 아저씨가 오@ 언니의 피어싱을 보고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야, 안 아프냐?" 오@ 언니가 **백인 남자였대도 그랬을까요?** (사례 85)

5) 혼자서만 진상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 대응과 효과

괴롭힘을 통해 쉽게 평가되고 침범될 수 있는 소수자성을 경험하면서 대다수 제보자들은 모욕감, 수치심, 억울함, 혐오감, 분노, 당황, 짜증 등의 감정을 느낀다. 이 감정은 괴롭힘 행태나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당시 몸이 굳어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

22) 브래지어와 코르셋이 결합된 여성용 상의이다. 과거에는 란제리의 한 종류로 주로 입었으나, 현대에는 일상복으로도 입는다. (출처: 위키피디아)

후의 자책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여기지는 '엉만튀', '슴만튀' 같은 순간적 추행, 번잡한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들은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특정하더라도 지적하거나 잡을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 '튀어버린' 가해자 말고 남아서 복기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다. 아니면 공공장소와 낯선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의 강화, 즉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그도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여성이 피해자인 게 당연한 사회에서 살고있었(사례 6)" 는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재확인이다. 그런 면에서 반복된 괴롭힘 경험은 "담담"하게 다가오기까지 한다.

담담하다고 해서 괴롭힘의 영향이 작거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괴롭힘은 공공장소가 소수자에게 자유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공적 시간과 공간의 이용,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가져온다(Pain, 1991; Painter, 1992).

> 그 때 이후로 한동안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심화반 빠지고** 애들이랑 같이 집 가고 했어요.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도 거기 교회 앞쪽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요. (사례 131)

이처럼 제보자들은 길을 돌아가거나 학원/학교에 늦거나 빠지거나 등의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험한다. 아니면 밤늦게 다니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마중을 부탁하는 등 회피적이고 의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 소수자들이 제한과 제약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어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한과 제약을 어긴 자신의 문제로 도치해 정당화하는 통념(의 내면화)이야말로 길거리괴롭힘의 강력한 사회통제 효과이다.

그러나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항상 실패하거나 단일한 것도 아니고, 두려

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지속/심화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괴롭힘의 지속적, 구조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전형을 벗어나는 대응이나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두세 번? 그 노인이 그런 말과 시선을 보낼 때마다 **지지 않고 무섭게 노려봤어요**. 그가 시선을 피할 때까지. 날씬하네 어쩌네 하던 목소리가 알아듣기 힘든 웅얼댐으로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눈길을 피합니다. 좀 허탈하더군요. **이정도 대응으로도 겁먹고 물러나는구나**,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 **반격도 못할 만큼 만만하게 보여서** 몇 달이나 그런 소리를 해댔구나. (중략) 저는 이런 일을 **가만히 당하거나 피하지만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도 교훈을 좀 얻어서 다른 여성에게 그러지 않고 있길 바랍니다. (사례 46)

> 특히 취객이 맞은편에 앉았는데 히히덕거리고 손가락질 하며 대놓고 쳐다보길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두꺼운 펜으로 **뭘 봐 라고 적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인줄 알았는지 안 본 척들을 하더라고요 (사례 178)

사실 길거리괴롭힘의 가해자들은 나이나 성별 같은 귀속적 속성 말고는 다른 사회적 자원이나 권력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한 줌 권력"을 내세워 "진상 짓"을 하는 어찌보면 "찌질이들"이다. 따라서 찌질이들에 대한 반격은 위처럼 의외로 쉽게 성공하기도 한다. 바바리맨의 노출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조롱하고 구경하는 여학생들은 괴롭힘의 상황을 역전시킨다. 그러나 여러 제보자들은 함께 목격하는 성기 노출은 별 영향이 없지만 혼자 있는 곳에서 일어난 성기 노출은 두려움과 무기력한 대응을 낳는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괴롭힘 대응에서 목격자, 조력자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 그러면서 길을 건너 골목으로 진입하기 전에 돌아보니 그 새끼는 간데없

고 웬 아주머니가 헐떡거리며 저를 쫓아오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도 어느 순간 저와 저를 쫓아가는 남자를 발견하고 주시하고 계셨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는 그 남자를 촬영하려고 폰을 꺼내드셨다고 합니다. 그 놈은 아주머니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때서야 오던 길을 되돌아갔대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큰일날 뻔했다며 한동안은 이쪽 길을 다니지 말고 우회하거나 해서 다니라고 당부하시며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사례 28)

이처럼 괴롭힘의 상황을 도와준 목격자를 전하는 사례들이 적게나마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목격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특히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아무도 그 상황에서 말리거나 그 아저씨를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사례 78)"나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도 "분명 내가 지나가고 있던 가게는 불이 켜졌고 영업 중이었지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사례 103)"던 경험은 제보자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이후 회피적 제약 행동들을 낳았다.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했고, 여성을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역량을 키우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처럼 여성 개인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전략을 키우는 한편으로 우리는 집합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공동의 대응책, 목격자이자 조력자로서 주변 시민들의 역할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아래의 목소리는 이 공동대응책의 필요를 절절히 전하고 있다.

저는 신체방어훈련도 받은 적이 있고 길거리, 공공장소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면 유심히 챙겨보는 버릇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나름대로 실태를 보며 열심히 대응책을 찾은 거지요. 하지만 스무해도 넘는 세월이 흘러 40살이 된 지금, 성희롱을 가한 남성에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대응을 못한 저를 보니 **저 개인적으로 대**

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한번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젝트로 여성들의 길거리괴롭힘 경험이 더욱 많이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길거리나 공공장소서 성적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또 상세히 밝히고 길거리괴롭힘을 근절시킬 길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 위해. **더 이상 혼자 분노하며 대응책을 찾지 않기 위해.** (사례 192)

지금까지 살펴본 제보사례들은 길거리괴롭힘의 한국적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성적 추근거림이나 성소수자, 인종 차별 언행들이 많이 나타나는 서구 사례와 비교해, 한국에서는 급작스런 추행(엉만튀, 슴만튀), 성기노출/접촉이 꽤 많이 나타났으며 성적 대상화 뿐 아니라 젠더표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흡연 여부 등 정상적 몸이나 예의범절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무례한 간섭과 평가의 언행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무례함을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 내에서 행사하는 '아저씨'나 '할저씨', '아줌마'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길거리괴롭힘이 세대와 계급 문화와도 연결된 문제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다. 세계적 흐름과 유사하게 괴롭힘의 경험은 어릴 때부터 반복되어 발생하고, 이는 더 큰 폭력을 예감케 하는 소수자성의 체험으로 다가와 여러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과 시공간을 제약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현재에도 사건의 감정과 영향은 반복 체험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다양한 대응법을 구사하며 조력자이자 목격자로서 동료시민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괴롭힘 대응에서 무기력한 과거의 나와 "지금은 다를 것이다"란 제보자들의 가정이 현실화되기 위해 이 집단적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C

2015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 행사 부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참고용)

상담통계나 제보사례의 경향과 비교했을 때, 외부 행사에 설치된 캠페인 부스에서 수집된 2015년도 사례들(이는 괴롭힘 경험 유형을 스티커로 표시하고 간단하게 포스트잇으로 적게 했기에 자세한 서사/이야기는 아니다)은 동성애 혐오, 성차별 언행의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언어적 성희롱이나 괴롭힘, 젠더포현 모욕/간섭도 상담통계나 제보사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가 수집된 행사들의 성격 상 성소수자의 경험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게 아니라, 여성 일반의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소수자의 경험들이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젠더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소수자의 경험이 그동안 말해진 여성의 성폭력/성희롱 경험과 어떻게 겹쳐지거나 겹쳐지지 않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10〉 외부 부스 수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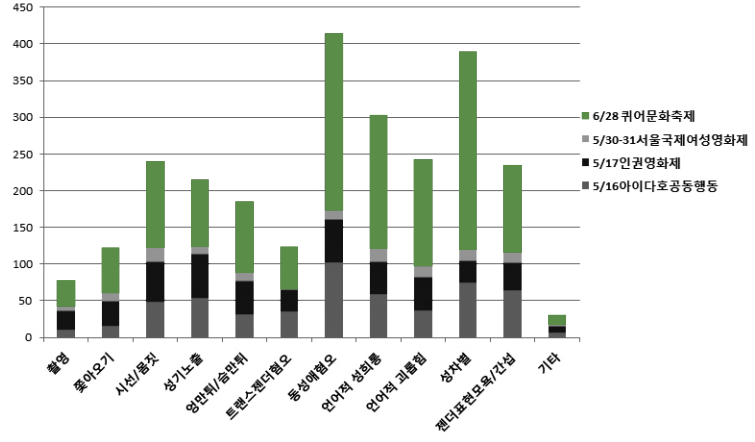

〈표 11〉 부스별 행위유형 빈도수 (단위: 건)

유형분류	전체	5/16 아이다호공동행동	5/17 인권영화제	5/30–3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6/28 퀴어문화축제
촬영	77	10	26	6	35
쫓아오기	122	16	33	12	61
시선/몸짓	240	48	54	20	118
성기노출	215	54	59	10	92
엉만튀/슴만튀	185	32	44	12	97
트랜스젠더혐오	123	35	29	2	57
동성애혐오	414	102	58	13	241
언어적 성희롱	303	59	44	18	182
언어적 괴롭힘	243	37	45	15	146
성차별	390	75	29	15	271
젠더표현모욕/간섭	235	64	37	14	120
기타	30	7	8	2	13
총계	2577	539	466	139	1433

4
FGI 분석

A
공공장소에서 나타난 괴롭힘 경험의 일상성과 부정적 효과들

전체 상담통계만 보자면, 대부분의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폭력의 암수범죄율을 보고하는 기존 데이터에서 친밀한 관계나 가족에 의한 폭력범죄 보고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23] 이러한 점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성적괴롭힘(성희롱, 쫓아오기, 시선 몸짓, 혐오표현 등등)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처벌되지 않는 범죄로서 형법에 의해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도, 강간보다도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피해(김지선, 2006; Gardner, 1990; Pain, 1991)이다.

앞서 상담통계와 제보사례분석을 통해 길거리괴롭힘 행위의 다양한 유

23)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으므로 공식적인 신고를 통해 사건화 되는 비율이 낮다는 측면에서 숨어있는 범죄(暗數)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범죄 암수추정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암수범죄율 추정은 87.5%로, 성폭력 신고는 사건 대비 암수비율이 특히 높다. 형사정책연구원(2008),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참조.

형을 제시하면서, 경험자의 입장에서 그 경험의 일상성을 지적한 바 있다. FGI 참여자들 역시 길거리괴롭힘 경험에 대해, 공통적으로 "너무나 '일상화된 문제'라 어디서부터 경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그 일상성을 지적한다. 일부 여성들만 생애사적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겪는 괴롭힘과 폭력은 한편으로는 '일상성'으로 인하여 집단적 '여성'의 공통 경험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일련의 괴롭힘 행위는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를 '소수자'로 재확인하는 차별의 문제이다. 이는 집단으로서의 여성 전체만이 아니라, 나이어린 여성,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 장애나 '다른' 몸을 가진 여성에 대한 중층적 차별로서, 결국 한국사회의 소수자성에 대한 차별 문제이다.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라도 각자의 연령, 장애여부, 소수자여부, 이주여부,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괴롭힘의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고, 경험의 차이가 있다.

> 정말 일상화된 문제여서 아, 이걸 또 사실 사례를 떠올리는 게 힘들 정도인데, 뭐 장소를 따지자면 정말 제일 많은 거는 대중교통, 지하철 택시 같은 것도. 지하철은 내가 피하면 되는데 택시는 그 공간에서 목적지까지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쓱 와서 "어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례 A)

> 무슬림에게는 그런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까무잡잡한 피부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히잡을 쓰고 있고. **일상적으로 "왜 그런 거를 입고 다니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혐오표현들을 수시로 겪는**. 개종한 한국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일들 중에 하나이고. (사례 B)

성소수자인 〈사례 A〉는 길거리괴롭힘 경험의 일상성 자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괴롭힘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로서, 여성들이 이동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남성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점차 특정 수단을 회피하거나, 그럼으로써 이동 수단과 장소가 제한되는 과정까지를 드러낸다. 〈사례 B〉 역시 이러한 일상적인 지적과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연애시기부터 대중교통을 회피하고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주민 배우자를 둔 〈사례 B〉는 한국사회에 일상적으로 만연한 외모에 대한 평가, '적절한' 옷차림에 대한 지적 등의 언어적 괴롭힘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에게 수시로 발현되는 방식을 지적한다.

한국사회 공공장소에서 드러난 일련의 괴롭힘 행위들은 여성,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는 경험이다. 여성에게는 본질적인 고정된 역할과 사회적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여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네 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강력한 훈육(김현미, 2016)[24]이 괴롭힘이 의도하는 공통된 효과이다. 정희진(2006)은 성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여성 공통성을 강조하는 젠더 개념이 한편으로 모든 여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환원하여 동질적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가부장제에 기능적이라는 김은실(2001)[25]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성폭력 발생 원인이나 이후의 투쟁은 여성 개인의 사회의식, 자원, 장애여부, 인종, 사회적 관계망, 학력, 계급, 외모, 나이, 건강 상태, 비혼 여부, 지역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26]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괴롭힘을 수시로 경험하는 여성 일상의

24) 김현미(2016), "여성운동 변화를 위한 현실 진단".
25) 김은실(2001),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과 대중문화", 《여성의 몸, 몸의문화정치학》, 또하나의 문화.
26) 정희진(2006),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서: 공간, 몸, 성폭력",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p.238.

공통점에 주목하면서도, 여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결국 '길거리 괴롭힘'이라는 개념도 이성애중심, 비장애중심, 성인중심, 선주민중심의 경험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여성간의 차이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이다.

B
장소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

린다 맥도웰(2010)[27]은 남녀노소, 이성애와 동성애자에게 장소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한 의미와 다양한 권력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지적한다.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집은 안전한 장소인 동시에 덫일 수 있고, 하루 일을 마친 임금노동자에게 집은 천국일수도 있고 나이와 젠더의 복잡한 관계가 협상 및 재협상되어야 하는 장소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해방과 탐험을 위한 공간인 도시의 거리와 공원이 다른 이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거나 공포스럽고 위험한 장소일 수도 있다(맥도웰, 2010 : 71).

1) '여성'으로 패싱되지 않는 '여성'의 경험

〈사례 A〉는 공공장소의 지역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수준과 내용을 지적한다. 서울에서도 '홍대'나 '신촌'처럼 이른바 성소수자들이 비교적 많이 눈에 띄는 장소에서도 "쟤네들 레즈비언이

27) 린다 맥도웰(2010),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다"라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발언을 듣는 경우가 많지만, '시청'이나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막 다가가서 들여다보는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 **저는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어떤 지역에 가 있느냐인 것 같아요.** 지역의 차이가 되게 큰데, **서울 안에서도 홍대 같이 (성소수자가) 눈에 밟히는, 제 눈에도 밟히는 그런 공간에 가 있을 때는 아무도 막 가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막 시청 같은 그런 업무 공간, 막 삼사십대 주로 있는, 그런 공간에 가면 이 스캐닝이 확 다르게 느껴지고, **서울을 벗어나면 더 심해지고. (중략)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어느 공간에 와 있구나.'** 하는 게 그런 데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례 A)

후술하겠지만, '여성'으로 패싱되지 않는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통제는 공중화장실처럼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지만 철저히 성별에 따라 구분된 공간에서는 출입과 이용 자체에 대한 통제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 예를 들면, **십대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뭐** 삼십대 사십대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기 나이에 대한 인식도 있고 내가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곳을 갔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 공간을 가는 걸 그냥 포기하거든요.** 그니까 밖에 외출을 해도 화장실에 갈 법한 시간으로 절대 약속을 잡지 않아요. 네 시간 이상 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가더라도 꼭 참는다. **학교 같은 데서도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한 번도 화장실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사례 A)

불편함을 넘어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폭력적인' 경험으로 인해 처음부터 공중화장실 출입을 회피하기 위해 생리적 현상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로인해 건강까지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

례 A>는 젠더중립화장실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화장실' 출입을 '젠더표현'과 '성소수자 혐오'로 인하여 통제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고민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별구분에 따른 장소가 어떻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특징에 관한 통념을 사회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수행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과연 그 공간에서 누구를 배제시키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 여성으로 패싱되었을 때 더욱 취약해지는 경험

여성은 '여성'으로서 패싱되는 순간에도 남성과 달리 장소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겪는다. '여성'으로 '자연스럽게' 패싱되었을 때도 즉시 '여성'으로서의 소수자성으로 인지되어, 여성 집단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비하를 경험하게 된다.

> 더더욱 이제 장애여성이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상상 안 하잖아요. **여성이 흡연하는 것에 대한 상상 자체를 안 하기도 하지만, 장애여성이.** (중략)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혼자 많이 피우기도 하는데, **이제 대구에서는 차마 그렇게 또 폭력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실제로 당한 동료들도 있고,** 비장애여성이었는데. "어디 젊은 여자가"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적 차이에서 좀,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사례 C)

남성들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는 장소가 서울이든 대구이든 시내이든 교외이든 크게 달라질 지점이 없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보수적인

장소'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스스로 '조심'하거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사례 C〉는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여성의 흡연'은 '사람들의 상상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기 전에 '무조건 주변을 둘러보고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C〉는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공개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시선에 대한 저항이라는 '활동가의 운동적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C
위치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

1) 여성이자 장애를 가진 몸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몸'

장애와 비장애의 분류,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장애가 있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은 공공장소에서 각각 다르게 경험된다. 여성으로 보여지는 몸이자, 동시에 '정상성'에서 벗어난 몸으로 보여지는 순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몸'으로서 더욱 중층적인 차별을 경험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여성들은 시선, 언어적 폭력, 신체접촉의 대상이 되는 경험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 〈사례 C〉는 자신이 만약 장애남성이었다면 사람들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태도에 대한 경험은 훨씬 적거나, 달랐을 것이라 말한다.

> (휠체어가 지나가기 위해) "선생님 조금만 비켜주시면 제가 지나갈 수 있겠다. 편하겠다." 그랬더니 "못 들었어?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가란

말이야 저쪽으로 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게 뭐라고 할까 너무나 무시감, 모멸감이 드는 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 모멸감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애남성이면 사실은 또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짐작컨대 드는데(사례 3)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녀들이 경험하는 길거리괴롭힘의 시작이 외관상 반드시 '악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곤란하거나 목격자와 같은 주변인들의 적절한 개입조차 어렵게 된다.

길거리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 남성들이 접근을 하는 방식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나는) 그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 횡단보도를 예를 들면,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휠체어를 막 만지면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전동이라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도와준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마치 접근하는 사람은 선의, 선의에 의한 접근. 본인이 폭력이고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의에 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더욱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이걸 **거부하는 저는 희한한...** (사례 C)

〈사례 C〉은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괴롭힘'과 '선의'의 경계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장애여성을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으로 삼으려는 '통념'에 대해 지적한다. 즉, 직접적으로 장애 자체에 대한 통념과 편견이 담긴 시선이나 몸짓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접근이 어디서부터 괴롭힘이고, 선의인지 불분명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도 장애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이다. '장애인을 돕겠다'는 선의를 가장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상황을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힘들게 만든다.

'도와주려는 것'뿐이라며 어떠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느닷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 장애여성이 타고 있는 휠체어에 무조건 손부터 갖다 대는 것으로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조금은 과도한 친절'이 아니라 '위협'과 '폭력'이다. 그러나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마치 장애여성이 타인의 '선의'를 무시한 사람으로 폭언, 비아냥거림, 조롱과 같은 또 다른 '시비'의 대상이 되어 일련의 괴롭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혼자보다는 동행인이 있으면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경험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심현정, 2013)는 기존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달리, 장애와 같은 표지는 오히려 집단적인 시선, 집단에 대한 괴롭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폭력의 대상이 된다.

> **혼자 다녀도 엄청 일상적으로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들이 있잖아요. 둘 셋이 같이 다니면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은 장애유형인, 제가 이제,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장애인데 같은 골형성부전증 장애여성과 같이 다니면 더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사례 C)

장애여성들에게 '선의'라며 접근하는 '보호적' 태도는 자신보다 연령이 어려보이는 어린아이나 십대,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한국의) 예의범절을 알려주겠다'는 훈계식의 접근방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 맥락 안에서는 단지 젠더질서를 벗어난 여성의 몸에 대한 제재만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통제하고 타인을 가르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주로 연령에 따른 차별 주체에도 해당하는 "아재", "할저씨", 때로는 "아줌마")의 일관된 방식의 무례함이 포함되어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통념은 공공장소를 포함하여 폭넓게 일상화되어있지만,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경험은 '외출'과 같은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넌진상 홈페이지 제보사례를 보면,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비오는 날 (장애인이) 왜 돌아다니느냐, 나 같으면 나가기 싫을텐데"라며 면전에서 훈계와 조롱을 내뱉은 중년여성(아줌마)이 등장한다.

너스바움은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평등한 가치를 지닌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장소의 출입에 대한 권리를 언급한다. 공공장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너스바움, 2015: 557).[2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교통수단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 보장의 문제만으로 단순히 볼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장애를 가진 몸이 보호 대상이나 쉽게 접근할 있는 몸이 아닌 경계를 지닌 몸으로 존중받는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하다.

2) 이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

단일한 인종, 민족성을 꾸준하게 강조해온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의 단순한 수적 증가만으로 타인종, 민족성 혐오와 차별가 쉽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표에 따라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는 고스란히 길거리에서 시선, 몸짓, 언어적 괴롭힘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주민은 외관으로 드러난 '타 인종'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 공공장소에서 쉽게 특정종교와 인종에 대한 반감 정서의 '타겟'으로 분리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이민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 수시로 사용되며, 일상적으로 신고와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8) 너스바움(2015),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집트 여성인데, 정읍역에서 정읍역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웬 한국인 남성이 테러리스트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 10명이 와서 잡아갔대요.** (사례 2)

또한 이주여성들은 손쉽게 선주민 남성에 의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선주민 여성(물론, 선주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성원권을 획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만큼의 동등한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타자화된다. 백인여성과 결혼한, 또는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한국남성은 다른 한국남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백인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상적으로 자신의 몸을 훑어보는 한국 남성들의 시선 · 몸짓을 마주해야 한다. 출신국가를 불문하고 '백인 여성'이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는 한국 남성들의 통념으로 인하여, 백인 여성들은 '백마'로 언급되면서 클럽이나, 길거리, 대중교통 안에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성적 대상이 되어버린다.

(외국인과 연애중인 대학생 사례) **제가 백인하고 가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남자 애들한테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의 시선, 그리고 머리, 골빈** 어쩌고저쩌고. (중략) **한국남성이 백인여성과 가는 건 선망의 대상이죠. '부럽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가는 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례 B)

반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킨 주체처럼 평가된다. 이주여성에 대한 일상적 차별은 이주민과 결혼한 선주민에 대한 비하와 혐오 발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인 선주민 배우자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주민과 결혼했는지를 묻는 무례한 시선과 태도에 일상적으로 직면해야 한다고 한다.

그 무례한 시선이나 태도는 이주민의 성별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위 사례처럼 외국인 남성과 함께 길을 걷는 한국인 여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 옆에 있는 외국인 남성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되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그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듯한' 무례하고 노골적인 시선과 몸짓이라는 것이다.

이주여성은 피부색, 체형 등 외부로 드러나는 인종적 특징에 대한 '품평'은 물론, 시선, 언어적 폭력, 신체접촉의 대상이 되는 경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러나 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그녀들이 경험하는 길거리괴롭힘 역시 때로는 외관상 '악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느닷없는 접근마저도 선주민의 '순진한 호기심'에 의한 행위로 연출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많은 시선을, 그게 뭐 **악의적인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호기심조차도 불편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고, 콩고언니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이렇게 만져본대요. 그러면서 **"아우 피부는 부드럽네?" 이러면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 개인적인 터치, 쑥 들어오는 질문. 뭐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사례 B)

〈사례 B〉의 '개인적인 터치'와 '쑥 들어오는 질문'은 외국인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인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위계를 전제로 동등하지 않은 성원에 대해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위치 짓는 차별의 행위이다.

> **이주민이기 때문에 늘상 반말을 들어야 돼요. 십대처럼. '얘들, 쟤들.'** 그래서 저희 멤버들 중에는 택시 안에서 가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가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쟤들은 뭐,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아저씨 쟤들 몇 살로 보이시는데, 쟤들 얘들 하시냐고." (사례 B)

이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반말을 듣는 것은 일상의 경험이다. 행위자들은 이주민이 통상 한국어에 서툴러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상정하거나, 언어에 서툴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성인이 아닌' 상태로서 마치 '함부로 해도 되거나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거기에다 '어린아이'나 '십대'처럼 일상적으로 반말 듣는 것이 당연시 되는 집단의 존재를 승인하는 연령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관습과 태도가 결부되면서 이주민은 한국사회 안에서 '어린아이'나 '십대'에 상응하는 사회적 위치에 놓인다.

3) 연령에 따른 중층적 차별: 성적 대상으로서의 '욕망'과 '훈계'의 대상

무례한 사람들에 의해 수시로 반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주민과 달리, 어린아이나 십대는 '일상적인 반말'에 노출되어 있다.

> 어린이들은 사실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 어딜 가든지 반말을 듣고. 아니면 만지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른들한테는 못물어볼 만한 질문들 물어보고, 뭐 "몇 살이니?" 이런 거 물어보고. 어른들한테 그런 거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못 물어보지. 그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례 D)

〈사례 D〉는 한국사회에 일상적으로 만연한 연령주의가 길거리괴롭힘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지적한다. 길거리괴롭힘은 정의내리기 따라서는 사람이 안전함을 느끼는 '경계'의 침범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손쉽게 일상적으로 경계 침범을 당하는 집단의 경험을

분석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의식 수준을 점검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나이'가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 오히려 경계 침범을 당한 십대 여성들은 스스로 방어할 기회마저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 의해 빼앗길 위험이 높다.

> **지하철에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다리를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 만지는 거 불쾌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린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하면서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런 갈등상황이 있을 때, 어린데, 버릇이 없고 그 **상황의 정당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린데 버릇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청소년 운동에서는 앞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담배 피우다 맞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좀 되게 가벼운 처벌, 훈방** 뭐 이렇게 하거나... (사례 D)

그럼에도 십대 집단은 곧잘 가해자의 위치로만 상정된다. 길거리괴롭힘의 제보와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많은 어린아이와 십대 여성, 때로는 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십대 남성들에 의한 길거리 추행,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십대 남성들 스스로 '폭력' 또는 '가해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당연한 성장과정의 에피소드쯤으로 희화화시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장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십대가 무리지어 다니는 것에 대해 '철없는' '거침없는' '불량한' 십대들이 모여 '일탈'을 공모하는 것과 같은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고, 그럼으로써 더 큰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성인들(특히 아저씨)에 의해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쉽게 당연시된다.

십대들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늘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연

애는 '방종'이나 '일탈'이라는 시선에서 더욱 자유롭지 못하다. 십대남성과 달리, 십대여성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는 주체보다는 성적 보호의 대상이자 성인들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중층적인 위치에 따라 대상화시킨다. 그러면서 십대여성들을 피해자의 위치이거나 일탈한 주체로만 이분법적으로 분류한다.

> 근데 한편으로 여성청소년의 경우에 나이가 많은 남성이랑 연애를 할 경우에 받는 시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만남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실상과 상관없이 아니면 뭐 피해자일 것 같고 아니면 속아서 아니면 도둑질 당한 물건 취급?** 그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례 D)

〈사례 D〉에 따르면 십대 여성의 위치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연락처를 물어도 되는 대상쯤으로, 이른바 '쉬운 대상'이 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성인남성과 연애를 하는 경우에도 십대 여성들은 끊임없는 훈계의 대상이 된다. 십대 여성들의 일상은 '(피해자로서)불쌍하게 보는 시선', '(일탈행위로서) 곱지 않은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4) 모호한 젠더표현, 성소수자 정체성? 성원권이 없는 시민

번스타인은 '패싱'이 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특권으로서, 성별을 가지면 무엇보다 확실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번스타인, 2015: 205).[29] 즉, 그녀는 성별이 없거나, 패스할 수가 없거나, 패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29) 번스타인(2015), 젠더 무법자, 바다출판사.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면서, 성별이 있거나 성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거리에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얻어맞을 일도 없으며, 공중화장실의 어느 쪽을 써야 할지도 알고, 공중화장실을 쓸 때 사람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더 심한 일을 겪지도 않는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번스타인은 보통 FTM이 패싱이 더 잘되는 이유에 대해, 모호하게 젠더화된 사람을 "남자"로 돌리는 문화의 경향과 관련이 크다고 말한다.

> 남자 분이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남자 분이 들어와서 이제 뒷목을 잡고 끌고 가는 거지. "어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요?"** 이러면서. 남자가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 가냐고, 그런 경우고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쏜살 같이 나가서 딱 그, 역무원이면 신고를 딱 해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동안에 밖에 있는 거지. 똑똑똑 해서 나가면 뭐 이런 신고를 받고 왔는데, 뭐 "여자시냐, 남자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하하, 있는 거고요. (사례 A)

〈사례 A〉는 "남자냐, 여자냐"는 질문 자체도 무례하지만, 모호한 젠더 표현은 '남성'으로 읽혀지고, 상대방의 무례한 질문에 대한 책임 역시 질문을 한 행위자가 아니라, 모호한 젠더 표현을 하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MTF인 번스타인은 전철역 플랫폼에서 술취한 남성으로부터의 폭언과 비웃음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모욕'은 젠더 수호자[30]가 쥔 채찍 중 하나라고 말한다(번스타인, 2015 : 146). 그러면서 그녀는 모욕은 사실상 문화의 모든 층위에서 승인되며, 모욕은 문화의 다른 채찍인 폭력으로도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사례 A〉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길거리괴롭힘

30) 케이트 번스타인은 젠더이분법에 순응하여 젠더질서를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젠더수호자, 즉, 젠더체제를 앞세워 나머지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젠더를 사용하는 젠더테러리스트로 명명하며, 이들은 젠더위반자, 젠더 외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설명하면서, 동성애혐오 폭력은 젠더 수호 행동 중 하나라 지적한다. pp. 125~126

은 경험자의 인내심 있고 예의바른 태도마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무례라고 직설적인 평가임을 언급한다.

> 신촌공원이 십대여성이반들 모이는 공간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가면은 사람들이 "여기 레즈공원 여기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신입레즈비언이구나.' 생각해서 다 얘기해주고.** "요새 거긴 그런 문화가 없어요."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면, **그러면 뒤에서 "맞지? 맞지? 쟤네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엔 주로 쳐다보고 뭐, 이제 **쳐다보는데 이제 갈 때까지 쳐다보고, 갈 때까지 쳐다보고.** (사례 A)

성소수자는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한, 인종, 성별, 장애 여부처럼 밖으로 특징이 쉽게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억압과 차별에 덜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언제든지 발각되거나 폭로될 위험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기도 한다(한채윤, 2006).[31] 이는 인종과 장애 여부는 바꿀 수 없지만 마치 동성애자는 이성애자가 될 수도 있는 취사선택의 문제로 봄으로써 언제든지 강제적인 전환치료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포착한 것이다.

너스바움은 공공장소에 특정 대상을 선별적으로 수치스럽게 쳐다보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짧은 옷차림에 대한 시선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알리거나 이성애자들처럼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기만 해도 사회가 붕괴될 것만 같은 생각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비판한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너스바움, 2015: 541).

31) 한채윤(2006), "벽장 비우기: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와 이성애주의",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p.269.

5 대응전략과 사례

A

FGI에서 나타난 개인적 대응 전략들

FGI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 괴롭힘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즉각적인 대응을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더 심각한 폭력에 노출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상황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 **저도 이제 겁이 나잖아요. ... 친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 절대 그건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순간순간 갈등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사례 C)

물론 대면 자체를 피하는 회피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다.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난 뒤로 다른 길로 멀리 돌아서 귀가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주로 대면접촉이 가능한 장소가 대중교통인 것을 감안하여 차라리 그것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구입하기도 한다.

>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지하철 안에서 "왜 낳아가 지고, 왜 애

를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가 저 애 낳는데 도와준 거 있냐?"면서 지하철 안에서 대판 싸웠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대중, **어떤 그런 걸 기피하면서 '돈이 없어도 차를 사자.' 이러면서 다들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 대면 접촉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대면접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차라리 안 보면 편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차를 끌고 다니고...** (사례 B)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전략 중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자신의 외양을 꾸미는 것이다. 소위 '세게 보인다' 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일부러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특히 청소년의 경우)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등, 자신을 미리 방어하고 괴롭힘에 대해 예방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의 대상이 되어본 경험은 '진한 화장'을 통해 '성숙한' 외모로 바꾸거나, 무리지어 서있는 방식으로 집단적인 힘의 과시를 통해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왜 무리를 지어서 담배를 피울까 하면은 담배 혼자 피우다 맞을까봐 아니면 시비를 걸릴까봐 그러는 어떤 자기방어의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오히려 담배를 무리지어서 피우고 있다면 진짜. 그러면 사실은 시비를 못 걸죠. 무서우니까. (사례 D)

체구가 되게 작아서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완전 아이취급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이십대 초반에 빨간 립스틱에 눈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사례 C)

포식자보다 더 힘 센 먹잇감으로 보이는 위장과 무리 짓기 같은 개인적인 대응전략은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자기

방어훈련을 통해 그 다음의 '도피'나 '(필요시) 전투'의 가능성까지 높인다면 길거리괴롭힘 행위 경험의 빈도를 실제로 낮추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이 취한 전략의 성공에 대한 만족까지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대응은 한편으로 '(여자답지 않은) 드센 여자', '무서운 십대'라는 기존 사회적 통념을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길거리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 자체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그럼으로써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형태로서 괴롭힘 행위가 지속되는 한, 일상에서 괴롭힘을 겪는가 겪지 않는가는 여전히 한 개인의 '운'과 개인적 대응에 맡겨진 상황이다.

B
각자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감수성 있는 대응의 필요성

자기방어훈련은 타인의 폭력과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전략일 뿐만 아니라, '싸우는 여자', '다른 몸 되기'라는 경험을 통해 '여성다움'에 대한 기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스스로 몸의 통합성과 자존감을 지키자는 여성주의 철학이 담겨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직접 싸우거나 방어하는 개인적 대응 외에도 궁극적인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괴롭힘 상황에서 목격자나 경찰과 같은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목격자나 경찰과 같은 주변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괴롭힘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등 개인의 감수성이나 업무 태도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체계 구축에 감수

성이 얼마만큼 반영되는가의 문제이다.

> 근데 장애의 특성상 예를 들면 ... 그 중에 또 하나가 자치구에 '안전지킴이 집' 지정, 그 아시죠? 그걸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여성이 위협을 당했을 때, 거기 가서 대피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집 앞까지. 그래서 **구에 있는 그 24시간 편의점에_**휠체어 접근이나 이런 건 얼마나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모니터링을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가 접근이 안 됐고요. 사실 편의점도 보시면 대다수가 계단. 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어쨌든 그건 다 사적소유이기 때문에 뭔가 강제성을 두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휠체어가 접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언어장애 있으신 분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점원 분이든 아니면 뭐 주인이든 본인이 안전지킴이 집인지도 잘 알지를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이냐를 다시 한 번 돌이켰던 건, 갔는데 없어요, 편의점이. 문 닫은 지 1년 반이 넘어.** (사례 C)

〈사례 C〉는 여성폭력 안전 정책에서 배제된 장애감수성을 지적한다. '안전지킴이 집'에는 휠체어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고, 홍보와 관리를 포함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책의 실제 운용가능성 및 장애여부, 이주여부 등 사회적 위치와 개인적 자원과 상황에 따라 마련된 정책에서 제외되는 소수자 집단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애감수성 없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정책 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 역시 장애인인권단체의 몫으로 남겨져있는 상황은 정부와 다른 사회 부문의, 다른 시민들의 역할 방기이다.

C

해외의 대응 사례

여기에서는 해외의 길거리괴롭힘 대응법 및 대응전략을 소개해 보려 한다. 길거리괴롭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 한다는 점, 즉 테러와도 같은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만큼 대처에도 당황스러움, 두려움 등이 가중되어 더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기방어훈련(self-defense)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Stop street harassment의 Holly Kearl이 발간한 책『50 stories about stopping street harassment』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길거리괴롭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가 부여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례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세 가지의 대응전략을 세워보라고 권고한다. 소개된 대응전략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이 길거리괴롭힘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멈추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길거리괴롭힘입니다. 범죄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다닙니까?"
"괴롭힐 사람은 어떻게 고르십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무슨 짓입니까?"

경험자들은 괴롭힘을 당한 스스로가 아무런 대응이나 대처를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라도 대응을 하게 될 경우, 반대로 가해자가 충격에 휩싸이는 것 같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행동이라도 좋으니 (그저 똑바로 쳐다보는 것뿐일지라도) 대응을 시도해 볼 것을

조언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한다 해도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제어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함께 취해주는, 적절한 개입을 해주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앞서 서술되었던 다양한 정의들 중, Gardner는 시민들 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와 말초적 단계에서의 길거리괴롭힘은 결국 강간, 살인 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실제로 이러한 괴롭힘 경험이 누적되면, 소수자들은 스스로를 더욱 더 검열하고,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Fairchild와 Rudman의 연구(2008)[32]에서는 길거리괴롭힘이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길거리괴롭힘 경험과 대상화는 강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길거리괴롭힘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방증한다. 때문에 해외에서도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며 길거리괴롭힘 근절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Hollaback!' 이라는 대표적인 운동이 있고, 미국의 경우 'Stop Street Harassment', 영국의 경우 'Everyday Sexism Project' 등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 제보를 받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길거리괴롭힘을 가시화시키고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많은 노력이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거리에서 여성이 안전할 권리를 주창하며 달빛행진이나 잡년행진 등의 퍼포먼스를 겸한 캠페인을 진행했었고 2016년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길거리괴롭힘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를 제보 받고 있기도 하다.

길거리괴롭힘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는 사실상 어느 정도 몸소 체험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명명하진 않았다. 가장 최근의 강남역 근처

32) Fairchild, Rudman(2008), "Everyday Stranger Harassment and Women's Objectification",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공중화장실에서의 살인 사건은 들불같은 추모 열기로 사회적 파장이 번져 나갔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들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알지 못 하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공유한 것들에는 누군가 밤에 쫓아 왔던 경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언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 등 자신이 여성, 즉 사회적 소수자였기 때문에 경험했던 공포스러운 기억들이다. 이는 모두 길거리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10대 때부터 겪어 온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엔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체감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데,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의 길거리괴롭힘 반대활동 사례들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

법적 근거의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해외의 경우,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세계 각지에서 사법행정의 대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영국의 노팅험셔 경찰은 여성혐오(misogyny)를 범죄로 규정하고, 길거리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다.[33] 이 뿐만 아니

33) 가디언은 영국 내에서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죄로 카테고리화한 노팅험셔 경찰의 발표를 보도하였다.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6/jul/13/nottinghamshire-police-count-wolf-whistling-hate-crime (검색일: 2016년 10월 24일)

라, Stop Street Harassment에서는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시에는 어떤 단어로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지, 신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법적 체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각 주마다 길거리괴롭힘에 대해 어떤 식의 관련지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Know Your Rights'[34]라는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정리한 자료의 제공이나 경찰의 개입이 가능한 것은, 영국이나 미국 모두 차별금지법과 같이 기본적으로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에 기인하여 차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피해자가 경험하는 공포, 불쾌감, 그리고 이후에 예상 할 수 있는 더 큰 공포에 대한 것 등에 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하다. 때문에 길거리괴롭힘이 경시되고 그 심각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국내에도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당장의 조치인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전철칸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및 인도 등지에서도 제공 중인 서비스이지만 과연 이것으로 사회 자체가 바뀌는 것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당장의 안전 확보는 될지 몰라도 그 이후 증진 시켜야 할 시민의식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법 제도의 구축은 길거리괴롭힘을 엄히 처벌하자는 엄벌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안전할 권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다.

34) http://www.stopstreetharassment.org/strategies/sshlaw/ (검색일: 2016년 10월 27일)

6
나가며

한국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할 때 '밤에 걸어도 안전한 곳'이라는 홍보를 자주 한다.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광고 또한 여성들이 한밤중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누구나 반문 할지도 모른다. 진짜,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안전한 나라인가? 당장의 내가 당했던 밤중의, 또는 한낮의 길거리괴롭힘 경험에 대해 떠올리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한다. 이 사회의 경제적 규모 및 글로벌 이미지와 실제로 여성과 소수자에게 체감되고 인지되는 사회의 수준은 괴리가 굉장히 크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괴리감은 여태까지 명명되지 않았던 불명확한 일련의 길거리괴롭힘에서 기인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존중받지 못 했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감과 안전에 대한 의심, 자신의 일상에 대한 침범, 촘촘하게 짜여져야 할 사회안전망이 얼기설기 대충 짜여져 온전히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은 한국사회에서 여태까지 명명되지 않은 경험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웠고,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험들'의 묶음이었다. 그러나 개념이 없다고 하여 경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도 하였다.

길거리괴롭힘은 여성 또는 소수자로서의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것과 그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생애사적 특성을 띄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제보된 사례와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불쾌한' 경험들은 너무나도 급작스레 일어났고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가해자는 사라져 버리거나, 설령 신고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과연 '신고대상'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 역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좀 더 이 일련의 불쾌함, 두려움들에 대한 경험을 명명하여 개념화하고 여러 해외의 단체들이 그러했듯이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다양한 정의들을 모아보고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첫 단계를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합의된 적이 없다.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겪는 일상적 폭력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명명한 '길거리괴롭힘'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에서 보이듯, 길거리괴롭힘이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차별, 동성애혐오, 트랜스젠더혐오, 여성혐오, 나이권력, 인종차별, 종교 특히 이슬람혐오 등 권력의 차에서 오는 하위집단으로서 소수자, 또는 소수자성을 띄는 대상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혐오와 차별은 폭력 그 자체로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물질이 사회에 주입됨에 따라, 그 폭력은 점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35]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인 행위들은 앞서 서술하

35)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하는 두려움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고, 경험하는 행위의 순서와 경중도 각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계별 구분이라던가,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심각한 가해 행위다, 또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이 아님을 밝혀둔다.

였듯이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심적인 압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선부터, 신체적으로 직접적 심각한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살인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하지만 시선, 성기노출, 따라오기, 만지기, 몰래 카메라, 폭언, (성)폭행, 성희롱, 강간, 살인 등 일련의 행위들은 서로 전혀 무관한 행위가 아니다. 각각의 행위들은 폭력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부터 살인이라는 최종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행위들이지만, 결코 단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자들은 그 위험의 잠재성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진 뒤, 그 다음에 더 큰 위협과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예상으로 인해 경험 이후에 자신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자기 감시와 통제를 더욱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가해자의 보복자체가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주변인들에게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어'로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한편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때문이기도 하다.

●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여성과 소수자의 경험은 '길거리괴롭힘' 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가시화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여성들의 폭력 경험은 반드시 피/가해라는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만 구성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낯선 사람에 의한 '괴롭힘' 행위는 사회적 통념과 동떨어진 채 어느 날 불현 듯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행위가 아니며,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개념 안에서만 분류되는 행위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가능하다. 과연 그 괴롭힘 행위는 몇 가지의 행위로만 규정될 수 있는가? 같은 행위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할 것인가? 또는 이러한 가해 행

〈그림11〉 '길거리괴롭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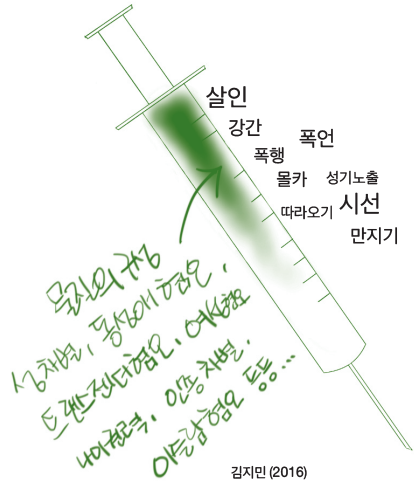

위들의 장소성에 대해서도 '공공장소', '길거리' 와 같은 개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해 경험을 하는 개개인의 특성, 소수자로서의 경험과 특징, 반대로 행위자(가해자)의 유형은 분류할 수 있는가? 경험자가 갖는 각각의 소수자성과 가해자의 유형에만 집중하여 인종차별부터 여성혐오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총체적인 차별과 혐오의 개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몰래카메라에 의한 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길거리에서 시작한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영역의 범죄로도 그 주제가 연결될 수 있다.

길거리괴롭힘은 가장 가시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폭력을 드러내고, 이후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젠다이다. 그러나 사회의 소수자성에 대한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문 1

개개인의 경험을 정치의 영역으로 : 여성혐오와 길거리괴롭힘

이지원 | 강남역 10번 출구 운영위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20대 여성들이 그렇듯 나 역시 전 생애에 걸쳐 수많은 길거리괴롭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길거리괴롭힘의 경험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문득문득 생각나 나의 생활과 판단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스스로에게마저 사소한 일, 개인적 불운으로 취급되었다. 내가 일상에서 마주했던 타인에 의한 침해를 '길거리괴롭힘'으로 명명하며 그것이 발생한 맥락과 나에게 미친 영향을 고민해본 것은 고백건대 최초의 일이다.

내가 중학생 때의 기억이다. 이웃인 남성 노인과 그의 어린 손주, 나 셋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평소 몇 번 지나가다 본 게 전부일 뿐인 그 노인은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던 중 별안간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더니 예쁘다며 내 입술에다 뽀뽀를 시도했다. 나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되도록 웃으며 아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던 것은 기껏해야 고개를 돌려 그 강제적인 접촉이 내 입술이 아닌 입술과 볼 언저리에 닿게끔 했던 것이 전부였다.

귀가해서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 토로했으나 어머니는 네가 예뻐서 그런 것이라며 이것이 어린 딸에게 벌어진 귀여운 해프닝인양 웃어넘기려 하다가 내가 계속해서 불쾌함을 표현하자 버릇이 없다며 도리어 나를 다그쳤다. 그때 나는 나의 피해 경험이 주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 실제로 길거리괴롭힘, 특히 집요한 시선 보내기, 희롱하기, 따라오기, 연락처를 요구하기 등은 피해자가 위협받거나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정도와는 별개로 사소한 일, 짓궂은 장난, 애정표현 쯤으로 포장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조차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침묵시킨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피해자의 경험을 축소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예로 '시선강간'이라는 신조어에 가해지는 날선 비난을 들 수 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통용되는 단어인 시선강간은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어왔던 경험에 기반하며 만들어져 사용되는 신조어로서, "상대(주로 여성을 특정)를 집요하게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선"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개 남초 커뮤니티(다수 남성들이 포진해있는 포탈 댓글 창 등)에서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여성들의 경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지하철에서 땅바닥만 보라는 말이냐", "자기들을 보는 게 아닌데 착각도 유분수다"라는 식이다.

괴롭힘은 추행 뿐 아니라 성별표현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학생 때의 일이다. 나는 짧은 머리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남성인 친구와 비치볼을 하던 중이었다. 내 또래의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나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어왔다. 형과 내기를 했다고 하면서. 나는 그들의 표정과 언행을 통해 그들이 이미 내가 여성임을 알고 있는 채로 내 성별을 물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정성별 남성으로 존재하는 그들에게 나의 '불완전한 남성성', '흉내 낸 남성성'은 우습고 재미있는 유희거리이자 내기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내가 너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굳이 감추려하지도 않았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으로서 내가 표현하는 남성성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지만 그것이 여성혐오와 성소수자혐오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의 혐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고 나는 나의 성별표현을 검열함으로서 그러한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평소 스스로의 꾸밈과 표정, 말투를 검열하는 방식은 길거리괴롭힘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았다. 내가 연령과 성별 등을 통해 소수자로 특정되는 이상, 그리고 소수자를 타겟으로 한 괴롭힘이 일상적 문화로 존재하는 이상 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괴롭힘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망치거나 침묵하는 것 역시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을 넘길 수 있는 방편은 될지언정 괴롭힘 자체를 피할 수 있게끔 하지는 못했으며 외려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나아가 자존감을 하락시켰다. 피해 당사자에게 길거리괴롭힘에 대응하고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었다.

몇 달 전 지하철에서의 일이다. 한 남성 노인이 스킨십을 하는 커플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향한 욕인 것을 눈치 챈 커플이 자리를 옮기자 더욱 기고만장해서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법한 쩌렁쩌렁한 소리로 욕을 이어갔다. 내릴 역이 되어서도 내리지 않고 지하철 문이 닫히지 못하게 문 가운데 서서 “개보년들”, “모텔을 잡아라,”라며 욕에 열을 올렸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는 내내 나는 나이권력과 성별위계로 행해지는 폭력에 화가 났고, 그 노인을 향해 “나가, 이 새끼야.” 라고 말했다. 그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타겟을 나로 바꿔 “따라나와, 개보년아.”라며 위협했지만 몇 분이 지나 결국 자리를 떴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다만 그 세 마디를 한 것으로 나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서 자유로웠으며 불시에 일어나는 길거리괴롭힘에 대응하는 것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해자나 제3자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폭력의 위협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길거리괴롭힘은 비교적 최소 범위의 침해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소수자로 특정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실재하는 위험이었으나 강남역에서의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 이전까지 나는 이것이 나 개인의 불운한 경험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강남역에서 나는 길거리괴롭힘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 **강남역 10번 출구에서의 여러 증언**

"나도 스물 세 살이다. 엊그제 강남에 있었다. 죽을 수 있었단 뜻이다. 단지 여성이기에 칼로 난도질 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술을 마실 때도 집에 들어가는 밤길에서도 일상생활을 할 때마저 최소 몰카부터 토막 살인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여성들은 계속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앞으로도 '집에는 더 빨리 들어가야지, 강남역에는 가지 말아야지' 하는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 발언 중 일부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 경험들이 있었다. 술집에 갔는데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고 거부하자 때리려고 했다. 고2 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가 치마에 손을 넣고 추행을 했다. 단지 감기로 갔을 뿐인데. 남녀공학에 다녔는데 일상적으로 얼굴과 몸매를 평가당했다. 못생겨서라며. 뚱뚱해서라고 말하며 때리기도 했다. 사범대를 나와서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다. 남학생들이 키득키득 웃기에 가서 봤더니 내 몰카를 찍고 있었다."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 발언 중 일부

"여성혐오 범죄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추모제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워 친구와 함께 가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전화번호를 달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번호를 준건 아닌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 발언 중 일부

이는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과정 중, 우리 사회 여성혐오에 대해 증언하자는 취지의 자유발언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길거리괴롭힘을 여성혐오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것이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나타난 여성 대상 살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전화번호를 맞게 준 것인지 확인하는 행위,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는 행위가 이제껏 이 사회에서 위협과 폭력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다만 관심의 표현, 짓궂은 장난쯤으로 이해되었던 것에 비해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막연하게나마 여성을 특정한 여성혐오의 발로이자 침해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남역에서 여성들은 이제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요구되어왔던 '더 조심하고 더 검열하는' 방식으로는 이 모든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강남역에서의 한계는 여성 대상 괴롭힘 행위를 비롯해 실제로 일상에 대한 현격한 침해로 나타나는 여성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한국 사회에 여성혐오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는 거의 최초로 등장하여 그것이 실재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 수준의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역 사건의 여성혐오성을 주장한 페미니스트들 역시 여성혐오의 예시로서 자신의 길거리괴롭힘 경험을 들기는 했지만 이 역시 막연하고 직관적으로만 이해되었을 뿐 길거리괴

롭힘을 구체화 범주화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논하는데 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소수자혐오는 소수자성을 타겟팅한 괴롭힘을 야기하고 소수자성을 타겟팅한 괴롭힘은 자연스레 소수자혐오를 강화시킨다. 성별, 연령, 장애여부, 성적지향, 성정체성, 국적, 지역, 종교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소수자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혐오에 기초한 길거리괴롭힘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엉만튀', '슴만튀' 등 길거리괴롭힘을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사회는 다수의 사회구성원, 특히 소수자성을 중첩하여 내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길거리괴롭힘을 개개인들이 경험하는 사소하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개개인의 경험을 구체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수자혐오의의 일환이며 이를 강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최근 강남역 사건으로 촉발된 많은 여성들의 성찰과 폭로는 그러한 합의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하리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현병 병력이 있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형량으로, 재판부가 이 사건의 소수자혐오범죄의 성격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강남역 이전까지 무수히 많았던 여성 살해의 역사 속에서 이 범죄만 유일하게 여성혐오 범죄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문 2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

한희 | SOGI법정책연구회, 트랜스젠더 활동가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일어나지만 명명되지 못했던 길거리괴롭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성, 소수자들의 보다 많은 경험들이 이야기되고 이를 통해 길거리, 공공장소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토론문에서는 발제문에서 이야기된 길거리괴롭힘 사례들에 추가하여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괴롭힘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길거리괴롭힘에 대한 논의들을 추가해보고자 합니다.

- **패싱되지 못하는, 패싱되기 위한 노력**

  얼굴을 딱 고치고 나서부터는 제가 만족하는게 뭐냐면은 여자 화장실 다녀도 이제는 어색하게 안 봐요. (트랜스젠더 여성, 38세)

  가슴 제거하고 나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구요. 그 진짜 여름에 세 겹을 입고 다녔으니까요. 나시 위에 반팔 위에 반팔을 입고 다니고... (트랜스젠더 남성, 26세)[36]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위의 두 당사자의 이야기와 같이 수술 후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낍니

36) SOGI법정책연구회(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 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다. 그리고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공적 공간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 수술이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이 얼마나 젠더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발제문에서와 같이 '패싱'이 곧 특권으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남녀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트랜스젠더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여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저기 트랜스젠더다, 여장남자다'와 같은 조롱, 나아가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등 폭력과 괴롭힘이 포함됩니다.[37] 이러한 모호한 젠더표현은 외모, 옷차림, 머리모양, 키 등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외모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패싱에 더 어려움을 겪고 그렇기에 보다 이러한 차별과 괴롭힘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한편 연구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길거리괴롭힘의 원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이는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많은 곤란을 겪는 부분인데, 특히 외적으로 여성으로 패싱이 될수록 목소리와의 괴리로 인해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노출되곤 합니다. 이는 또한 길거리괴롭힘을 실제로 당해도 상대 및 주위사람들에게 섣불리 소리를 내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여성으로서 인식됨, 또 다른 위험

한편 발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가 한쪽 성별로, 특히 여성으로 패싱될 경우 다른 의미로의 차별과 괴롭힘 경험이 나타납니다. 이는 앞서의 모호한 젠더표현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띄는데 여성으로 인식되면서 겪는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 비하와 더불어, 미디어 등에서 과도

37) 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233명 중 66.2%가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 응답하여, LGBT 그룹 중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하게 성적으로 묘사된 트랜스젠더의 이미지로 인해 트랜스젠더임이 드러날 경우 보다 손쉽게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편견은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결합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 비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경우 경찰에게서 성노동혐의로 체포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walking while trans'라는 이름으로 이슈 및 캠페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화장실의 안전성, 젠더 다양성

발제문에도 나오지만 화장실은 다른 공공장소와는 달리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면서도 철저하게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표현이 어느 한쪽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성별과 다른 젠더표현을 가진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 이용에 있어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연구용역한 〈성적 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중 44.2%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 응답했고, 그 중 불쾌한 시선을 반복적으로 받음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을 저지당한 경험도 13.0%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은 결국 공중화장실 이용의 포기로 나타나는데, 응답자 중 41.1%가 공중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화장실의 포기는 화장실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의 트랜스젠더의 비가시화로 이어지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58%가 화장실 문제로 밖에 나서기를 꺼린다고 응답한적 있습니다.[38]

한편 이러한 화장실의 어려움은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젠더 표현이 지정 성별과 불일치한 경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인

38) Jody L. Herman, 〈Gendered Restrooms and Minority Stress: The Public Regulation of Gender and its Impact on Transgender People's Lives〉, The Williams Institute, UCLA School of Law.

권위의 동 보고서에서 동성애/양성애자 등 응답자 108명 중 성별표현이 불일치한 경우 45.9%가 공중화장실에서 차별경험을 겪었다 대답했으며, 이는 비성소수자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들과 같이 여성스럽지 않은 외모의 여성의 경우 보다 손쉽게 화장실 이용에 있어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강남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이후로 정부 및 일각에서 그 대안으로서 공중화장실의 성별분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은 우려를 느낍니다. 발제문에서도 지적하듯, 성별분리화장실, 여성 전용 주차장, 전철칸 등과 같은 성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눈앞의 안전 확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사회에 만연한 젠더 권력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성이 혼자 다닌다는 것만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사회 속에서 여성만의 공간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노출시켜 오히려 더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별구분을 위해서는 결국 외모든 법적 성별이든 남/녀를 구분하고 규정짓게 되며, 그러한 틀에 맞지 않는 젠더표현을 가진, 또는 이분법적이지 않는 젠더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배제시킴으로서 가시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길거리, 공공장소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길거리괴롭힘에 대한 추가적 논의

앞서 이야기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또는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길거리괴롭힘의 개념,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논의들을 추가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문의 서론에 나타난 외국의 길거리괴롭힘의 정의들은 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위협, 성희롱, 발언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듯,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듯 길거리괴롭힘이 모두 남성권

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젠더 권력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력차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승인된 젠더 구조에 위치한 사람이 갖는 권력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에 모호한 성별 표현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 구조 그 자체가 갖는 권력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길거리괴롭힘은 법적 또는 생물학적 성별에 무관하게 여성으로 보이는, 또는 남성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앞서 트랜스젠더의 경험과 같이 같은 성별정체성, 법적 성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별표현이 그와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성별과 성별표현의 교차적, 그리고 나아가 연령, 인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갖는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라는 공간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지 입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길거리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대로변이 아닌 화장실, 대중교통 등 다양한 공공장소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화장실이란 공간은 철저하게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장소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그 외의 공공장소들 역시 그 장소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소성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또한 공통적 요소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학교, 직장 등 특정 생활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괴롭힘을 겪을 수 있는 공간과는 어떤 차이 내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길거리괴롭힘을 보다 의미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괴롭힘의 다섯 가지 유형과 차별금지법(안)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대 교수

● **괴롭힘을 조사/연구한다는 것의 의미**

- 기존의 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을 포착하여 불법화하는 것(법적 의미)
- 기존의 법으로 포섭되는 문제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현상를 조망하는 것(사회학적/여성학적 의미)
- 법과 무관하게 새로운 문제현상을 포착하는 것(사회학적/여성학적 의미)

● **괴롭힘의 다섯 가지 유형**

- 차별행위로서의 직장내 성적 괴롭힘(성희롱)

  직장 학교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기본적으로 차별행위의 일종임 (예: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cf) 이 때 '괴롭힘'을 '성' 이외의 다른 차별금지사유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함. 예컨대, 성적 괴롭힘, 장애 괴롭힘, 성적지향 괴롭힘 등등 (예: 영국 평등법)

  cf)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성희롱을 인정할 경우, 차별 이외에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직장내 괴롭힘

  차별과 무관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참조: 직장 괴롭힘[39])

39) 류은숙 외,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 괴롭힘은 어떻게 일터를 지배하는가, 코난북스, 2016; 구미영 외,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신체적 정신적 고통야기행위

  존엄성 침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야기,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분위기 조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 야기 (예: 한국 장차법, 차별금지법안, 영국 공공질서법/괴롭힘법)

-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상대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면회/교제 요구, 쫓아다니기 등의 행위 (예: 한국 경범죄처벌법, 영국 괴롭힘법)

- 집단 따돌림(bullying)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심리적으로 괴롭히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40] (예: 학교폭력예방법)

※ 참조: 영국 괴롭힘 관련 법제

■ **영국 괴롭힘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① 놀라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를 규정함.

② 폭력사용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일상적 삶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놀라게 하거나(alarm) 고통(distress)을 주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함.

■ **영국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위협적 모욕적 말/행위나 글, 표지, 기타 표현물을 사용하여, 괴롭힘(harassment), 불안, 고통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경우 범죄로 규정함. 주거니 내 행위는 대상이 아님.

■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

금지된 차별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을 규정함.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신념, 성별, 성적 지향과 관련된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효과를 갖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가 괴롭힘에 해당함.

※ 참조: 프랑스노동법상 괴롭힘

■ **프랑스 노동법 L. 1152-1조**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40)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편, 괴롭힘 예방: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사회적 역량 개발, 아카데미프레스, 2013; Susan M. Swearer, 괴롭힘의 예방과 개입: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동형 역, 학지사, 2011.

● **괴롭힘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 거리 괴롭힘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 행위가 '차별행위'여야 함.

–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차별과 관련한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기타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의한 괴롭힘으로 확대되어야 함. 이 때 직장/학교 내 지위를 이용한 각종 괴롭힘 일체가 불법화되는 것임.

– 차별과 무관한 괴롭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문제이며, 노동법 차원의 입법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일종의 노동권, 노동인격권 보장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길거리괴롭힘의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차별금지법에 규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셋팅되어 있는 법구조상 어려움이 있음.

– 길거리괴롭힘은 스토킹의 일종 또는 공공질서 위해행위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되며, 이 때, 스토킹법 또는 영국식 공공질서법과 같은 법으로 규율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 경우 젠더 관점이 개입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질서위반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행위를 상정하게 됨.

– 스토킹이나 집단따돌림 등은 차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괴롭힘 관련 법/법안 현황

■ 직장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신체적 · 정신적 고통야기행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별금지법안(정부 발의, 2007.1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차별금지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2008.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3조(괴롭힘 금지) 제10조부터 제32조까지와 관련하여 성별등1)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별금지법안(권영길의원 대표발의, 2011.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 모욕감 ·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 위협적 ·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대표발의, 2012.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 모욕감 ·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 위협적 ·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제33조(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대표발의, 2013.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 2013.2.20.)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6.9.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 · 근무지 · 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하 "주거지등"이라 한다)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 · 편지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등 또는 특정한 장소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바.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 집단 따돌림(bullying)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성별등"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뜻함.

** 기타 다른 법안: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등 10인, 2016.9.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2016.6.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015.2.13.); 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의원 등 10인, 2013.6.19.);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2012.8.27.);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재균의원등 10인, 2009.1.9.);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의원등 25인, 2005.9.27.); 스토킹방지법안(이강래의원등 15인, 2003.10.13.);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김병태의원등 13인 외 21인, 1999.5.24.);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 범죄' 또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도 있다.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의원 등 18인, 2016.10.13.);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의원등 22인, 2005.11.28.).

II

우리를 위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가이드

1 시작하기 전
프로그램의 이해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여성주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자신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캠프, 주말도장, 단회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요소를 담아낼 수 있다.

기획자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면 프로그램 기획이 어려울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 참여해본 경험은 참여대상에 특화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어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기획할 수 있다.

기획자는 반드시 기획에 앞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읽어두기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필요성과 의미, 문제의식을 이해해야 프로그램을 잘 기획할 수 있고, 실행하면서 참여자와 고민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조금의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기방어훈련이 어때야 하는지는 기획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참여자가 흥미진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읽어두기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 이매진 / 2011

소녀들의 심리학
그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고 왜 등을 돌리는가
레이첼 시먼스 지음 / 정연희 옮김 / 양철북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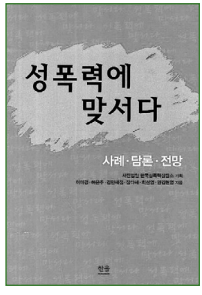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 한울아카데미 /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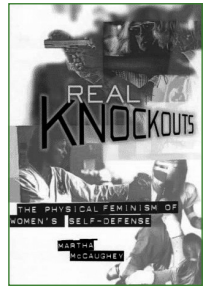

Real Knockouts
The Physical Feminism of Women's Self-Defense
Martha McCaughey / New York University Press /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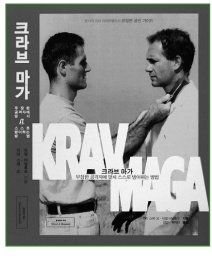

크라브마가
무장한 공격자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
이미 스데오 · 이얼 야닐로프 지음 / 정건 최하란 옮김 / 스쿨오브무브먼트 / 2014

2 기획단계
기획단과 프로그램 구성하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기획단계에서, 그리고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모두 마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의 한 가지는 **정보의 수집과 검토**이다.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몸 훈련과 운동 프로그램을 조사해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참여대상의 선정**, 즉 '누구와 할 것인가?' 이다. 성폭력생존자? 십대여성? 성인여성? 혹은 대상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참여집단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에 잘 반영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기획단회의를 통해 그것을 구체화해보자.

기획단

기획단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진행 시 발생하는 실무를 분담할 참여자를 말한다.

기획단 모집양식의 예

이름/별칭	연락처
반성폭력/여성주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참여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기획단이 초기단계부터 함께하고 있다면 **기획단을 모집**할 필요가 없지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함께 기획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기획단계에서 기획단을 모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웹플라이어를 띄우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집양식으로 약 2주간 기획단을 모집한다. 신청서를 받은 뒤 전화나 대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쪽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신청자라면 기획단보다는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획단이 모집되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추진력을 얻는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기대하는 바,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충분히 함께 상의하도록 한다. 기획단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3 준비단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준비하기

강사와 장소 정하기

강사와 장소는 프로그램 진행의 기본요소이고, 적절한 강사와 장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강사는 누가 가장 적절할까? **여성주의 관점**이 있으며 **몸 활동을 다양하고 꾸준하게 해온 사람**이 가장 적당하다. 여성 무술사범의 카리스마는 참여자를 더욱 집중시킬 수 있다. 생활체육강사, 춤과 연극, 팀스포츠에 능숙한 강사도 좋다. 강사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획단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참여자들이 강사가 이끄는 대로 집중하고 끈기를 발휘해야 하는 만큼 참여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활기찬 기운을 흐트러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결정해야 한다.

준비단계에서 강사는 기획자(기획단)와 **관련서적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성주의 관점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사가 여성의 몸에 대한 고정관념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여성이 운동을 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다이어트와 몸매관리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목표를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또한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잘 전달되지 않

으면 강사는 참여자가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게 하거나 서로 비교하고 포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함께 다양한 운동을 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받아본 적 없는 **새로운 피드백**을 받는다는 데에 있다. 여성들도 격하고 거친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설 도장은 여전히 '남성적인' 공간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운동하고 싶은 이유를 이해받지 못해 '특이하다'는 말을 듣거나 다른 남성들과 비교되는 가운데 '역시 약하다'는 시선을 받으면서 '여성에게 어울리는' 다른 종목을 권유받거나 운동 자체를 포기하기 쉽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강사는 참여자의 참여동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 사이에 신체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강사가 하지 않아야 할 말들

"열심히 하셔야 체중감량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저앉으면 몸매가 나빠져요."
"남자 분들이면 더 고생시킬 텐데 여자 분들이니 살살 훈련할게요."
"바쁘게 나오시느라 아주 편하게 입으셨네요."

에, **각자의 미세한 성장과 변화**에 주목하고 북돋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장소의 선정**이다. 기존에도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 좋다. 참여자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운동하는 공간에 친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회관은 이용객이 많아 대관이 일찍 마감되고, 사설 도장은 수업이 있거나 대관료가 비쌀 수도 있다. 접근성이 좋고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하며, 대관료 부담이 적은 장소를 찾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장소에 대해 강사와 의견을 나누고, 강사가 장소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준비단계에서 강사와 상세히 소통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기획자(기획단)는 각 세부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물(예컨대 줄넘기, 축구공, 구르기매트)을 준비하고, 각 회기별 참여자의 준비사항 등도 미리 확인해둔다.

강사가 여러 명인 경우

기획자(기획단)가 원하는 몸 활동이 다양할 경우 두세 명의 강사가 나누어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강사가 여러 명인 경우는 사전에 전체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한다. 세부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성 있게 기획 진행되기 위해, 각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기 위해, 강사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함께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여자 모집하기

기획단계와 준비단계를 거치며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성을 띄고, 실현가능한 것과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앞두고 기획자(기획단)는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할 때 설정한 목표, 참여집단의 욕구, 강사의 역량, 진행장소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최종확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해야 한다.

참여자는 **사전인터뷰**를 거쳐서 선정한다. 참여자 모집양식에 종합격투기를 배웠다는 응답을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해내거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참여동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것인가 여부는 모집양식에 기입한 단답식의 응답이 아니라 사전인터뷰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양식의 예

이름/별칭	연령대	연락처
반성폭력/여성주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참여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사전인터뷰가 가능한 때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참여자 사전 체크리스트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였는가?
- 전체 일정을 숙지하였고, 참여가 가능한가?
- 서로 다른 참여자의 특성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앞서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였는가?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불편한 지점이 생긴다면, 함께 나누고 의논할 것인가?

4 실행단계
참여자와 함께 훈련하기

기획자(기획단)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반드시 참여자에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운동 경험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시 조율해야 할 부분에 대한 힌트를 미리 얻을 수 있고, 훈련 강도를 전반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등으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기획자(기획단)는 참여자의 변화가 긍정적인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행단계에서 참여자와 강사가 프로그램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은 기획자(기획단)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또 기획자(기획단)는 참여자들이 '다른 몸 되기'의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함께 잘 마치도록 조력해야 한다.

매 훈련이 끝날 때마다 기획자(기획단)는 참여자가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강사와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의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참여자가 불쾌감이나 만족감, 어떤 점이 어렵거나 좋았는지 등을 편안히 공유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어질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난 짤 다
참 여 자 여 러 분
환 영 합 니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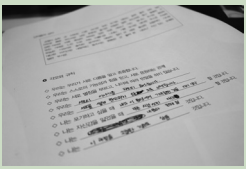

제34회 서울컵 종별 검도대회

1] 오리엔테이션 _ 목표와 규칙을 정하자

첫 만남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고, 각자가 별칭(참여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호칭을 생략한 별칭을 사용해 볼 수 있다)으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든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목표와 규칙을 정한다.

▶ 각자의 목표를 드러내는 방식은 이미지, 글, 또는 둘 다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되 신체적 모습에만 그치지 않고 마음의 변화도 담을 수 있게 한다. 목표는 '힘차게 잘 달리기' '크고 정확하게 의사표현하기' '튼튼한 근육' '강한 눈빛' '자유분방함' '젠더표현에서 자연스러움' '야구를 잘하는' 등 다양할 수 있다. 서로의 별칭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목표를 사진으로 남긴다.

▶ 공동의 규칙을 정한다. 단 하루든 몇 개월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스스로 쉽게 포기하거나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동의 규칙은 필요하다. '지각하지 말기' '나이를 의식하기보다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기' 등의 규칙은 기획자(기획단)이 먼저 제안하자.

▶ 상시적인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소감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실행
단계
예시

2] 다른 몸 만나기 _ 여성스포츠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성스포츠를 관람하고, 여성스포츠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참여자들이 함께 여성스포츠를 관람하고 여성스포츠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른 나'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포츠규칙을 익히고 여성스포츠의 열악한 환경을 몸소 느끼는 경험도 된다. 참여자는 여성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이 극히 적을 것이다. 여성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거나 미비하고, 남성스포츠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꼭 여성스포츠인이 활약하는 여성스포츠를 보고 여성스포츠만의 매력을 느껴보도록 한다.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 참여자에게 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참여자 역시 자신의 새로운 강점과 매력을 찾고 '다른 나'에 다가설 수 있다. 그것은 여성스포츠인이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처럼 참여자가 누군가에게 '다른 여성모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는 데서부터
여성 스포츠를 시작하자
참여자들은 여성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이 극히 적을것이다.

실행
단계
예시

3] 소리훈련 _ 움츠리지 말고 소리쳐보자

여성들은 폭력 상황에서조차 크고 우렁차게 소리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소리훈련은 몇 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매 회 지속할 수도 있다.

▶ 큰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소리를 내는 것만이 소리훈련의 전부는 아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경직될 때 호흡이 가빠지며, 넓고 멀리 뻗어가는 소리를 내지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리훈련을 진행한다.
차분히 심호흡을 하고, 몸을 부드럽게 이완한 채 소리를 내보낼 수 있다.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제자리를 뛰면서, 주먹을 내지르는 시늉을 하면서,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소리로 발산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이 차분할수록 괴상하게 소리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참여자들은 몸동작을 작게 하라는 요구만큼이나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에 스스로도 익숙할 수 있다. 작은 목소리만큼이나 감정표현도 작아진 것은 아닐까? 정당한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 순간에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자기자신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일상적인 침해나 폭력 상황에서 소리/언어로 대응하는 내용의 즉흥연기를 시도해보자.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발성보다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 체력, 표현력, 소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훈련되어야 한다.

4] 체력훈련 _ 체력을 튼튼히 기르자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체력훈련이다. 여성에게 체력훈련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자신감도 증진시킨다.

▶ 참여자는 몸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또는 이전에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즐거움을 잊고 있을 수도 있다. 체력훈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깨우고, 몸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깨는 시작이다.
단시간에 체력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고 싶다는 마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다는 용기는 심어줄 수 있다. 통증이 수반하는 격한 몸 활동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첫 단추는 꿴 셈이다.

▶ 체력훈련의 내용은 다채로울수록 좋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이나 근력으로 버텨야 하는 활동은 모두 적당하다. 가벼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 형식도 시도할 수 있다. 어렵기만 하거나 쉽기만 한 내용은 흥미를 잃으므로, 가장 쉬울 수 있는 데에서 시작해 다소 버거울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린다. 축구와 농구가 수업 내용이라면, 달리기, 공을 잡거나 차는 방법 배우기, 공을 가까운 거리에서 천천히 주고받기, 먼 거리에서 천천히 주고받기 등을 순차적으로 익히고, 규칙을 단순하게 만든 변형게임을 진행한 뒤 실제 규칙도 배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친숙할 수 있는 줄넘기도 어떤 참여자에게는 낯설고 생소하다. 매트가 준비된다면 구르기를 해도 좋고, 태권도 품새를 간단히 익히게 하는 등으로 무술에 대해 흥미를 유도해도 좋다. 웨이트 동작, 윗몸일으키기 등도 무리하지 않고 함께하면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활동이

체력을 튼튼히 기르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되는것은 체력훈련이다.
다람을 흘리는 활동, 몸싸움, 낯설게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도전해보고 새로운 재미를 탐색해보자

든 참여자는 다른 사람과의 체력 차이보다 자기자신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스트레칭을 하고 재량껏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신체를 크게 쓸 수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중심으로 한다. 여성은 공간을 작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서 공간 활용에 서툴기 쉽다. 자신의 보폭, 힘 있게 펼쳐지는 몸,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 큰 움직임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소리훈련에서 익힌 대로 소리도 내본다면 더욱 좋다.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운동의 즐거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동작이나 운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배우는 첫 시간이 될 것이다. 몸이 좋지 않거나 활동이 불편한 복장의 참여자는 시작할 때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동작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준비되었을 때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

▶ 참여자가 스포츠모임이 있다는 소식에 솔깃하고, 가까운 도장의 간판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면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오랫동안 굳어져온 몸의 규칙이 한정된 시간으로 모두 바뀌기는 어렵다. 참여자가 프로그램 이후에도 몸 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땀을 흘리는 활동, 몸싸움, 낯설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도전하고 탐색해보도록 권한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동안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팀스포츠의 즐거움을 맛보았다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팀스포츠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공터에서 공만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축구의 경우 지자체마다 여성축구단이 운영되며, 활발한 팀은 주3회씩 연습하기도 하고, 시합도 한다. 아마추어 여성야구단에 입단해도 매 주말 열띤 야구 연습과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농구도 좋다). 무술에 관심이 있다면 태권도, 유도, 검도, 쥬짓수, 무에타이, 합기도, 복싱, 까뽀에이라, 택견, 종합격투기 등을 가르치는 도장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 자기방어기술훈련 _ 유용한 기술을 배워두자

체력훈련과 함께하거나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자기방어기술훈련이다. 이것은 폭력 상황에서 위험신호를 빠르게 알아채고 공격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 대개 '자기방어훈련'에서 연상하는 것은 호신술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알고 있는 호신술은 눈알을 찌르거나 고환을 걷어차는 것으로, 실제 연습해 본 경험은 거의 없으며, 막연하고 막강한 두려움 앞에서 그런 몇 가지 기술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여성에게 싸움이나 공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만남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 눈알을 찌르거나 고환을 걷어차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단회의 치명적인 공격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환을 제대로 걷어차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더구나 눈알을 찌르는 동작은 연습해볼 수도 없고, 심리적인 벽에 부딪힌다. 늘 상대를 배려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일상적 의사소통에서도 자기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여성이 폭력 상황에서 거침없이 상대를 가격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체력을 파악하고 발휘하는 훈련이 덜 되어있기에, 불쾌함과 분노를 단호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상상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성폭력 상황에서 즉각적인 상황의 판단과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 각자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다.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 '신체적으로 보다 약한' 참여자는 위축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버겁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 이때 자기만의 기술, 싸움도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의 경험에 귀를 기울인다면, 신체적으로 강하거나 훈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폭력 상황에 맞서고 대응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가 발휘한 용기와 지혜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 몸과 마음의 근육이 함께 붙을수록 실제 공격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도움이 된다. 내용은 기존의 호신술 일부를 활용할 수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응해내고 싶은 상황**을 나누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훈련할 수도 있다. 참여자가 생각하는 공격의 수위는 은근슬쩍 일어나는 신체접촉부터 머리채가 붙잡히거나, 온몸이 깔리거나, 목이 눌리거나, 명치를 강하게 맞거나, 상대가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상황까지 다양할 것이다.

▶ 공격자와 방어자로서 맞붙으면서 **공격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을 모두 경험**한다. 기획자(기획단)과 강사는 신체활동에 서툰 참여자가 '실전처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자기자신 또는 다른 참여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인다. 또, 훈련이 이전의 성폭력피해 또는 다른 폭력피해의 경험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의 용기를 격려하되 각 훈련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참여자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 자기방어기술을 통해 모든 폭력 상황을 피하고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싸움으로 끝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대응할 방법은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할 수 있다. 두려움만을 학습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점에서 새롭고 즐겁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결 연습에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 참여자는, 전처럼 '역시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변화를 발견한다. 운동을 계속할수록, 한 번의 싸움에서 졌느냐 이겼느냐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이 더욱 향상된 부분에 주목하고, '경험치'가 쌓이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화한다. 전 같으면 몸을 얼어붙게 하는 긴장감을 느꼈을 순간에 지금은 달리기 직전 준비자세처럼 온몸의 에너지를 단단히 모은 긴장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주 큰 변화다.

6] 여성주의 커뮤니티 형성 _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자

참여자들과 매 훈련마다 소감과 성과를 함께 나눈다면 훈련의 내용과 결과는 훨씬 좋아진다.

▶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한다. 운동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었지만 좌절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부터, 언제부터라고 꼬집을 수 없이 항상 '저질체력'인 참여자도 있다. 꼭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도전한 참여자도 있고, 자신이 건강한지 힘이 센지도 전혀 모를 정도로 자신의 몸이 낯선 참여자,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도 관찰하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참여자도 있다.

▶ 참여자는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몸을 이완하는 활동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운동경기로 팀워크를 쌓는다. 맞붙어서 하는 훈련은 긴장되지만, 안전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은 낯선 짜릿함을 주기도 한다. 같은 통증과 즐거움을 느끼기에 몇 회, 몇 시간에 불과한 만남에서도 친밀함을 느낀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훈련할 수 없기에, 관계 형성에 서툰 참여자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이 된다. 그것은 **몸을 쓰는 활동을 통한 우정**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이다.

▶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폭력피해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성폭력피해경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을 더는 무력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게 하는 변화를 일으킨다.

나의 신체활동 그래프

나의 몸활동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활동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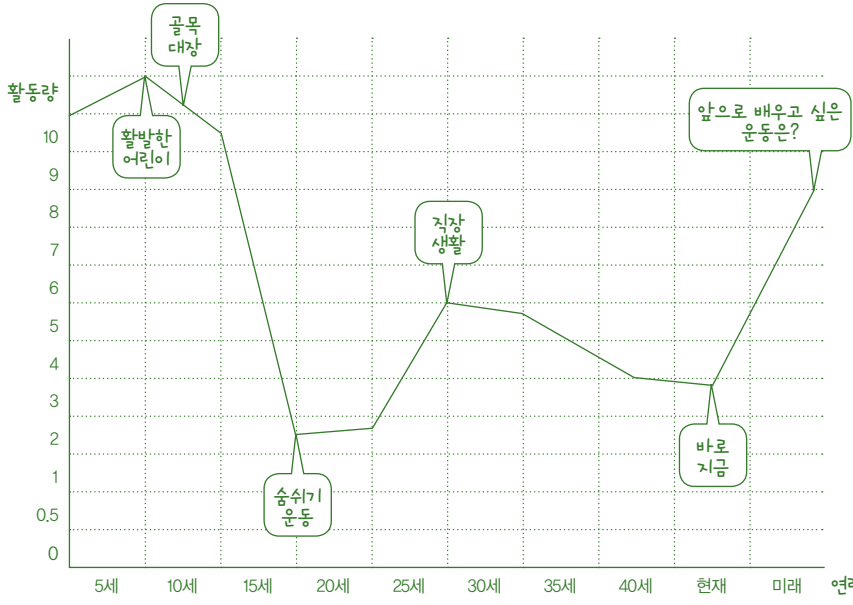

▶ 또 다른 변화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과 용기**다. 대중교통에서 큰소리를 내는 남성들에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라고 말을 거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다. 부당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혼자 삭이며 타인과의 다툼을 회피해왔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겉으로 화를 표현하는 것 역시, 갈등에 정면으로 맞부딪쳐 부정적 감정의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중대한 변화다.

▶ 참여자들은 수다를 통해 성별화된 사회(모든 것을 두 개의 젠더로 나누는 사회)에서 받아왔던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는 않았는지, 강요가 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 노브라라고 야단을 맞은 경험, 뛸 때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 놀림거리가 된 경험, 겨드랑이 제모를 하지 않고 수영장에 갔다가 어색해진 경험, 돈과 시간을 들여 외모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 받은 경험, 갖가지 여자답지 못하다는 질책을 받은 경험들이 한데 모이면서 '개개인이 조심하고 반성할 일'이었던 문제들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들'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자신의 욕구와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은 **나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여잔데 왜 운동을 하냐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 삶의 활력소니까.' '다리가 튼튼해진다'는 식의 이야기에도 다르게 맞받아칠 힘이 생긴다. '튼튼한 게 어때서?'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이후에도 또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계속 해나가게 하는 것은 각자의 결심이지만, 자기자신에 대해 충분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각자의 그 결심을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변화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자신이 느낀 것을 전하고 함께 하는 동료가 되어주는 것이다.

5 평가단계

결과를 나누기

후기발표회 예시

프로그램	시간
환영인사	19:00~19:20 (10분)
슬라이드영상	19:20~19:25 (5분)
참여자 후기발표 1 난다 (3명*6분)	19:25~19:45 (20분)
질의응답과 축하한마디	19:45~19:55 (10분)
참여자 후기발표 2 뛴다 (4명*6분)	19:55~20:15 (25분)
질의응답과 축하한마디	20:15~20:25 (15분)
참여자 시상	20:30~20:45 (10분)
참여자 수료식과 기념촬영	20:45~20:55 (10분)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각자가 짧게 발표하고 시범을 보이는 후기발표회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참여자는 자신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을 나누는 한편 앞으로 펼쳐갈 싸움에 대해 들려줄 것이고, 후기발표회의 참석자들은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잘 마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펼쳐갈 활약에 응원을 보낼 것이다.

후속모임

참여자들의 욕구가 있다면 후속모임도 가능하다. 후속모임에서도 기획자(기획단)가 실무를 전담할 필요는 없다. 후속모임의 성격에 따라 강사는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몸되기 훈련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방어훈련 기획자(기획단)가 조력하도록 한다.

III

이분법을 넘어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

이분법을 넘어 -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

권김현영 |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성학 연구자

얼마 전 군인 대상 교육을 하는 중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보다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라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처방을 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은 그런 목소리가 여론에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 이 장치들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가해자의 힘을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당해도 "내게는 손도 있고 뇌도 있고 다른 무기들도 있다"며 비웃기도 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기도 하며, 신상공개명단을 확인해봐야 두려움만 커질 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즉각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환상을 충족시켜줄 뿐이다.

효과는 명백하다 _ 여자들의 힘을 기르기

그렇다면 가해자의 힘을 축소시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힘을 기르는 방식은 어떨까?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feminist self-defense movement)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젠더이분법에 의거한 강간문화는 여성들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몸을 가졌고 남자들은 강하고 공격적인 몸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여자들은 잠재적 피해자로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여자들이 반격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여자들은 더 이상 쉬운 타겟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고, 방심했기 때문에 반격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여성의 몸은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고, 무작위의 공포심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남성들은 비웃고 가족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그 외의 여성들은 궁금해하고 격려했다고 답했다(Hollander, 2009: 584-587)[1]. 이런 연구들은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3년부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시도해왔다. 나 역시 그 기획에 참여하면서 내 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사용해보고 위험상황의 대처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즐겁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전에는 위험

1) Hollander. A Jocelyn, The Roots of Resistance to Women's Self-Defense, Violence Against Women Vol. 15, No. 5. May 2009. 574-594, Sage

상황을 떠올리면 분노와 짜증 때로는 공포심이 들었다면 자기방어훈련을 받으면서는 더 이상 그런 감정보다는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치 경기장에 나가는 것 같은 살짝 흥분된 긴장감이 들었고 그런 감정의 변화가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자의 몸, 여자의 공간

잠깐 돌아가보자. 여자들에게 스포츠 활동이 허용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예상대로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스포츠 활동은 금지되었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기원전 876년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4년에 한번씩 개최되었던 고대 올림픽은 서기 393년 제 293회를 마지막으로 500년 이상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출전은커녕 관람조차 금지되었다. 올림픽에 출전한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에 몰래 남장을 하고 들어간 어머니가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여성들의 연약한 체질은 체육활동 참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고 여자아이가 땀흘리는 것은 비위생적이고 여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용납되지 않았다(Swaddling, 2000)[2]. 여성의 스포츠 활동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주장되고 관철되기 시작되던 19세기 무렵 허용되기 시작한다. 1900년 2회 파리 올림픽에 최초로 여자 선수가 골프, 테니스 경기에 참여했고, 전쟁으로 인해 여성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해체되기 시작되면서 1922년 파리 대회에 100명의 여자 선수

2) Swaddling. Judith, The Ancient Olympic Games: Second Edition, Revised and Updated,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가 출전한 것으로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1948년 런던올림픽에는 여자 선수가 385명으로 급증한다.

이같은 변화는 1970년대에 북미와 유럽의 10대 여성들에게 체육 활동 시간을 늘린 결과 우울증, 마약, 원치 않는 임신, 폭력 등의 위험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1972년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체육활동 지원을 평등하게 하라는 Title 9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10대 여성들의 스포츠 참가율이 6배 이상 증가하기도 한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은 100주년을 기념하여 28개 종목 중 26개 종목에 여성 참가가 허용되었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야 28개 종목 모두에 여성 출전이 가능해진다. 최근 들어 각광받은 여성 이미지도 점차 마른 여성에서 잘 관리된 근육질의 여성이 선호되고 있기도 하다. 나이키는 “she run” 캠페인을 통해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테니스 선수 사라포바의 “I feel pretty” 광고는 경기장의 마스코트이자 향기로운 꽃으로 취급받던 여자 선수들을 둘러싼 농담에 정면으로 맞선다. 이어폰을 꽂고 웨어러블 기기를 몸에 착용하고 조깅하는 여성은 자유롭게 강인해보이면서 아름답게 그려진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적인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소비문화의 주체이자 자기계발의 화신으로 동등한 기회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강인한 ‘알파걸’들이 과잉 가시화된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의 여성혐오문화의 세계적 추이를 보면 말이다.

1970년대 시작된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이 소강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파괴된 사회안전망과 양극화의 심화, 여성스포츠활동에 대한 문화적 저항들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 무기력한 피해자에 머물고 싶지 않아하는 여성들의 필요와 욕망, 여성혐오문화의 확산과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 범죄의 양상 등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야망 있는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 없이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문화적으로 매력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약자, 소수자의 위치에 더 이상 동일시하기를 거부한다. 일례로, 2014년 미스 USA로 선출된 니아 산체스는 "최근 19%의 여대생들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타임지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여자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답하며 8살 때부터 배운 태권도가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해 당시 캠퍼스 성폭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의 공분을 모았다. 산체스는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다시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격렬한 항의("강간 문화가 다시 승리했다")를 받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The Broadside〉라는 여성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jennifer lee는 "계급, 페미니즘 그리고 미스 USA"라는 글에서 '산체스가 공격받은 것은 그녀가 페미니스트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학위도 없이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며 사실 그녀의 대답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주의 자기 방어 운동의 신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옹호'(lee, 2014)하기도 한다[3].

3) http://www.the-broad-side.com/class-feminism-and-miss-usa-nia-sanchez-jenniferlee

힘power이 아니라 역량강화empowerment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은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이 지난 30년 동안 받았던 의심이기도 하다. Hollander(2009)는 여성주의 자기방어를 둘러싼 사회적 저항들을 다음의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한다. "불가능하다(It's Impossible)", "너무 위험하다(It's too dangerous)",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It's victims blaming)". 피해자 책임론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많은 걱정들이 자기방어운동을 둘러싸고 있다. 반격이 가능하기는 할까?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데, 설령 자기방어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공격만을 상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피해자에게 제대로 저항했어야 한다는 피해자 책임론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다시 남성기준에 맞추는 일은 아닐까?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많은 경우 여성주의 자기방어운동이 추구하는 것을 남자와 동일한 신체적 힘(power)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핵심 가치는 "자기 몸의 현재적 위치성"을 기반으로, 그 몸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능력(ability)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자 책임론 혹은 유발론은 피해자가 애당초 질 수도 없는 책임을 지우고 비난하여 성폭력 문제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이후의 자신감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해한 담론이다. 여성

주의 자기방어훈련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려는 것이며, 남자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둘러싼 젠더 이분법적 제한들을 풀어보려는 도전이다. 2003년부터 여성주의 자기방어 운동을 펼치며, 인도, 캐나다, 스페인 등 8개국 언어로 자기방어 셀프케어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는 〈CREA〉는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위험의 실체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집단적인 의식고양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져왔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이 좋은 소녀, 착한 소녀로 칭찬받기에 '적절한' 행동이라고 배워왔는지를 다시 되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젠더 체제의 행위자로 잘 관리된 몸을 가지는 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자기방어훈련이 여성주의 의식고양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젠더규범의 문화적 관행들을 단지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과정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어야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IV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역사

2004년 으랏차차 청소녀를 위한 호신가이드북 제작

강간당한 여성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성적 공격 상황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이중 논리는 정말 모순적이지 않은가? 10대 여성에게 적용되는 이중논리는 더하다. 성애화된 몸으로서의 10대 여성의 이미지, 권리가 주어지기보다는 보호되어야 할 미성년자인 10대 정체성 –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10대 여성을 더욱 취약한 존재로 위치 지우고 보다 일상적이고 다양한 성적 공격에 노출되게 한다. 그러나 10대이자 여성이고, 인간이자 시민인 청소녀, '쏘녀'들은 각자가 가진 힘과 자원,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자기방어, 혹은 반격 대작전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지하철, 밤길 등 낯선 상황에서의 성적 공격부터 학교, 가족, 연애관계 등 친밀한 상황에서의 성적 공격까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을 재연하면서 다양한 반격의 가능성과 방법들을 제안한다. 또한 제작과정에서부터 실제 10대 여성들과 함께 실태와 활용 가능한 방법 등을 연구한 것이므로, 활용하는 현장에서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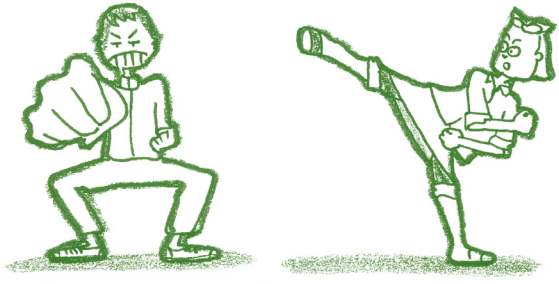

a

b

a. 생생한 고민과 표정과 감정이 묻어나는 그림 이 책의 만화는 책을 흥미롭게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신나고 통쾌하게 하기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페이지들을 따라가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b.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책의 주인공 오매, 키라, 효효, 로미 함께 분노하고, 고민을 나누고 언니들에게 도움을 얻어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2005년 걸파워훈련 쏘-녀들, 날아차다!

10대 청소녀를 위한 주말도장 "날아차기"

2004년 "으랏차차 청소녀를 위한 호신가이드북"을 발간한 이후, 10여 차례 강의 의뢰를 받아 중·고등학교와 단체 등에서 걸파워 강의를 하면서 많은 여성에게 직접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이 매우 절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주말도장 "날아차기"는 2004년 11월12일 ~12월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내 몸의 힘을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몸훈련을 받는 6주차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몸이 약해서 운동을 하려고, 경호원이 되고 싶어서, 내 몸은 내가 지키고 싶어서 등 다양한 동기로 참가하게 된 약 15명의 14세~19세 여성들이 왁자지껄 쾌활한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하였다.

걸파워캠프 "으랏차차 쏘-녀본색. 감춰온 힘을 드러내다!"

걸파워캠프는 2005년 12월 27~29일까지 2박 3일동안 진행되었으며, 16세~19세 여성들이 호신술 훈련 및 몸 훈련을 하는 것과 더불어 10대 청소녀의 몸, 관계, 욕구, 경험, 역사를 또래 친구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서 기획되었다. 추운 겨울에 약 30여명의 쏘-녀들이 함께

숨겨왔던 힘과 지혜, 경험들을 펼치면서 아주 특별한 공감대와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했던 뜨거운 자리였다.

시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9:00	9시 결집 춘천으로 출발	아침식사와 휴식	아침식사
10:00		운동회 – 겨울을 달린다	조별 발표+나누기
11:00			집으로 출발
12:00		점심식사	
13:00	점심 식사	나른한 오후 with DJing!	
14:00			
15:00	오리엔테이션	자기방어 몸 훈련 1	
16:00	여는 마당 –파이트백 대작전	자기방어 몸 훈련 2	
17:00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몸싸우기, 마음만지기	나의 몸, 너의 몸 작은 워크샵	
20:00			
21:00	영화 나누기		
22:00			
23:00		노는 시간 – 겨울밤 지새우며	
24:00			

2006년 성인여성 대상 주말도장

_ Women's Fighting Spirit
우리는 지금보다 강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2006년에는 10월21일 ~12월23일까지 10주간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성인여성 대상의 주말도장을 개설하였다. 이는 자신의 피해경험을 나누고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공유한 상태에서 보다 강도 높은 연습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2006년 주말도장은 명상, 몸풀기체조, 체력훈련 등을 통해 몸의 크기와 움직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비언어/언어적 반격을 계획하고 연습하는 훈련으로 기획되었다.

		소요 시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1 교시	준비 운동	15‘	기본관절	스트레칭	짝체조	기본관절	기본관절	기본관절
	명상, 화두	15‘	왜 내가 여기? 나에게 해주고픈 말	나의 근육 힘줄 몸의 존재	공포, 두려움 나의 느낌 그 이후/ 대처	힘이 되는 것1/ 분노의 대상1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싸움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들/삶
	기술, 대련	30‘	원리중심으로 세트(응용법)로 배우고 익히기/ 그 때마다 기술 이용 대련하기					
휴식		10‘						
2 교시	근력, 체력, 유연성	25‘	근력 키우기, 유연성, 스피드 키우기/ 게임형식과 경쟁, 팀별 게임					
	싸움의 무기들	10‘	10초 응시게임	눈감고 인기척 잡기	욕뱉기 욕 만들기	잡기/ 벗어나기	주먹 지르기	방어 하기
	나누기	15‘	소개 하기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독창과 벗어 나기	10‘	물구나무 연습	점프 발치기	벽타기	뛰뛰기 릴레이	뜀틀 릴레이	기마전

2007년

10대 여성 다른몸되기

_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

2005년에 기획되었던 걸파워캠프를 좀 더 확장시켜, 2007년 5월 셋째주부터 9월 첫째주까지의 4달간에 걸쳐 보다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몸훈련–몸활동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10대 여성이 제약받는 동시에 내면화한 성별규범에 도전하며, 지속적인 몸훈련, 무예훈련을 통해 여성적인 몸을 탈피하고 지리산 종주 심화훈련을 통해 확장된 몸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성·연애·관계 각본을 비판적으로 통찰함으로써 10대 소녀들이 자신의 삶을 독창적,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강자전거탐사, 3m 물속 도전, 지리산 종주여행, 무예도장 훈련 등의 다양한 몸의 경험을 통해 소녀들에게 다른 몸이 되어보자고 제안했던 이 프로젝트는 소녀들과 함께 실무자들도 다른 몸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 몸의 확장 내 몸과 만나기! 내 몸의 감각과 몸 훈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는다	1회기	첫만남+오오 몸이 열린다! : 오리엔테이션
	2회기	헙! 으랏차! 무예수련에 입문하기
	3회기	B-girl의 세계
	4회기	한강근육여행-자전거탐사
다른몸-여성만나기 '다른 몸'을 사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을 구상해보자	5회기	다른 몸으로 사는 여자들1
	6회기	다른 몸으로 사는 여자들2
지리산 종주여행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직면할 것! 지구력, 근력, 상황대응력, 공간능력, 자원활용능력 훈련	7회기	3m 물속 도전
	8회기	3m 암벽타고 하늘까지
	9회기	등산이란?
	10회기	5박 6일 지리산 종주
자기방어 컨설팅 일상관계 속 자기방어연습! 연애, 내 몸, 관계, 10대 여성으로서의 고민을 나누어 보자. 새로운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도 샘솟을 터!	11회기	연애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뒤집기 한판
	12회기	몸 – 아는 만큼 보인다
	13회기	관계 – 통찰의 힘으로 가꾸는
	14회기	10대 여성의 세상살이와 도전
무예훈련 지속적인 무예훈련을 통해 나와 만나자. 상대방, 공간, 세계와 만나고 싸워보자.	13주간	무예도장 훈련(3일/주 이상 출석) 종목 선택 가능 자기관찰기록 작성(인터넷 게시판), 과제 수행, 개인카메라(1회용 카메라)로 기록 촬영
	마지막 시간	발표회 : 우리들의 다른 몸-되기 여행

2008년 밤길되찾기시위 자기방어훈련프로그램 진행

2008년 밤길되찾기시위는 "달.타.령–달빛 타고 노는 영희"라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영희'는 단정한 옷차림에 귀밑 3cm의 단발머리로 대표되는 여학생으로 기억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의 여학생들의 모습도 그럴까? 시끌벅적한 교실, 교복 치마 안의 체육복, 격렬한 수다, 땀 냄새, 왕성한 식욕 그리고 은밀한 성욕을 가진 현실의 "영희"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유롭게 달타령을 벌였다. 이러한 밤길되찾기시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자기방어훈련에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 모인 수십명의 여자들은 태권도사범님의 시범에 따라 기합을 넣고 주먹지르기를 하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2009년 성폭력공포 타파프로젝트

_ 실전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라!

2009년에는 8월23일~10월25일까지 매주 1회, 3시간씩 약 20여명 정도의 20대~40대 여성들이 모여서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하였다. 무술도장에서 수련을 하는 여성들도, 주먹 지르기, 발차기 같은 일상훈련보다 실제 '겨루기' 훈련을 가장 넘기 힘든, 어려운 관문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점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실제 피공격 상황에서 무기력해지는 이유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깨뜨리는 훈련으로서 실제 폭력 상황을 가상으로 재연하고, 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9년 주말도장은 실제 공격/피공격 상황을 재연하여 싸우는 연습을 하는 '모델 머깅(Model Mugging)'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후반기 2회에 걸쳐 실전훈련을 진행하였다.

"모델 머깅(Model Mugging)" 북미의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이러한 폭력상황재연 및 대응 훈련을 '모델머깅(Model Mugging)'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진행해왔다. 모델 머깅(Model Mugging)이란, 실제 공격/피공격 상황을 재연하여 싸우는 연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단어 'mug'는 '강도가 뒤에서 덤벼 목을 조르다'는 의미이다. 모델 머깅은 강도가 덤비는 상황과 같은 극단적 긴장 상황을 연출하여 강도/공격자(mugger)에게 온 몸과 마음의 힘을 다해서 대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상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하고 공격을 한다. 그래야만 훈련을 받는 사람이 '봐주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상대에게 방어/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회~7회	8/23 (일)	기초체력 점검 및 향상
	8/30 (일)	내 몸의 가동범위 알기
	9/6 (일)	상대의 급소와 내 몸의 강점
	9/13 (일)	실전 달리기/다양한 낙법
	9/20 (일)	연속 동작 익히기/ 소리치기 훈련
	9/27 (일)	위험에 반응 속도 알아보기
	10/4 (일)	상대의 힘을 이용하기
8~9회	10/11 (일)	근육 강화 방법, 일격필살기
	10/18 (일)	리얼 파이트백 – 실제 싸움을 재연하여 공격자에게 대응하기
10회	10/25 (일)	리얼 파이트백 발표회 및 수료식

2014년

난뛴다
: 난다 뛴다 다른 몸

여자는 싸울 수 없다는 생각, 싸워도 지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깨부수고 여자다움 규범에 도전하고자 했다. 회기마다 주제토크 시간을 가지며 참여자들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였고, 후기발표회를 통해서 각자의 변화, 결심, 용기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었다.

1회 6/21(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전체 오리엔테이션** – 평등한 관계를 위한 규칙 만들기 – 스포츠영화 감상 및 '다른 나' 콜라주
2회 6/28(화), 고덕스마트리그구장	**여자야구 관람**
3회 7/5(화), 성미산	**몸 · 소리워크숍1** – 감각열기 : 고요하게, 또렷하게
4회 7/12(화), 순환창작소	**몸 · 소리워크숍2** – 움직이기 : 더 높게, 더 멀리 **특강**
5회 7/19(화), 순환창작소	**몸 · 소리워크숍3** – 반응하기
6회 7/26(화), 순환창작소	**체력훈련1** – 맨손운동과 기초체력 점검
7회 8/2(화), 유도장	**체력훈련2** – 줄넘기와 웨이트 트레이닝
8회 8/9(화), 체육회관 대체육관	**체력훈련3** – 구기운동: 축구와 농구 변형게임
9회 8/16(화), 유도장	**체력훈련4** – 태권도와 기본낙법
10회 8/23(화), 유도장	**기술배우기1** – 기본기술 습득 **특강**
11회 8/30(화), 격투기도장	**기술배우기2** – 복습 및 심화 – 단계별 실전대응
12회 9/13~14(화,수), 강화도 마니산	**숙박워크숍** –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하게 한 마음'
13회 9/26(화), 까페	**후기발표회**

2016년 진상퇴치 비법수행 : 갸.갸.갸

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예상 못한 위협과 폭력에 맞서는 힘을 발견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으로, 집단을 모집하여 전체 회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각 회기별로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갸.갸.갸'는 기획과정에서 만들어낸 말로, 세 개의 '갸'는 각각 갸르르(호탕하게 웃는 소리), 갸갸각(날래고 파워 있게 움직이는 모습), 갸우뚱(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경지)을 의미한다.

1회 3/8일(화) 10~13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실용적 Self-Defense** 강사 : 최하란 (Krav Maga Global KOREA 인스트럭터,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
2회 3/22일(화) 10~13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스스로의 강점 찾기** 강사 : 고재경 (한국여성태권도문화원 사무국장)
3회 4/2일(토) 14~1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맞춤형 기술 훈련** 강사 : 김기태 (한국형여성호신술 ASAP 지도자)
4회 4/9일 (토) 11~13시 사설사격장	**진격의 사격**
5회 4/30일 (토) 14~17시30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맞춤형 기술 훈련** 강사 : 김기태 (한국형여성호신술 ASAP 지도자)
6회 5월 28일 (토) 14~17시 망원한강공원	**대운동회(신발양궁/물총사격/릴레이질주)**

준비물 : 운동화, 활동이 편한 복장, 묶은머리, 짧은손톱

2016년 자기방어특강
: 싸우는여자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상가화장실에서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여성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하면서 겪는 무수한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증언들이 터져나왔고,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들 역시 공공장소 이용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이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절하고, 행동과 투쟁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3회기의 자기방어특강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다.

1회 6/18(토) 16~18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자기방어특강** 강사 : 김기태 (한국형여성호신술 ASAP 지도자)
2회 6/25(토) 16~18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3회 7/2(토) 16~18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2016년 성소수자를 위한 자기방어훈련 : 퀴어셀프디펜스

길거리괴롭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 생김새, 나잇대, 옷차림을 통해 유추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규범적인 젠더표현을 한 사람들, 성소수자가 많이 겪지만 이에 대해 잘 파악되고 있지 않고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활동도 적은 상황이다. 일견 다른 심각한 폭력에 비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길거리괴롭힘을 일상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일상을 위축시키거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시 같은 일 또는 더 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성소수자 집단의 욕구를 고려한 자기방어훈련을 준비하면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www.ddingdong.kr)의 자문과 협력을 받았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의 건강과 신체적 자신감 증진에 주목하는 신체활동 및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1회 6/26(일) 15~18시	– 단체소개 – 자기소개 – 마음열기/정체성의 이해 – 기본훈련–비물리적 대응	퀴어 셀프디펜스 강사 : 김기태 (한국형여성호신술 ASAP 지도자) 류은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2회 7/3(일) 15~18시	– 기본기술 습득 및 질의응답 – 소감나눔	
3회 7/9(일) 15~18시	– 지난 시간 복습 – 기본기술 습득 및 질의응답 – 소감나눔	
4회 7/16(일) 15~18시	– 지난 시간 복습 – 질의응답 심화 – 목격자의 몫 고민하기 – 소감나눔	

V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는
OX QUIZ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들의 생각과, 드라마, 영화, 뉴스에서 재현되는 성폭력 이미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폭력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자리 잡기도 한다. 이것을 점검하여 바로잡는 것은 성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맞서는 시작이다.

1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낯선 사람이다. (X)

낯선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 이웃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2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X)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곡한다. 성폭력을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의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 가능하고 묵과되는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는 남성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한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3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X)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지만 남성도 피해를 경험하며,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성폭력 피해자 중 약 13.6%정도(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 상담통계)가 남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드러내어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피해라고 해서 성폭력이 아니라거나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조심성 없는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X)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폭력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만드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독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

욕은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관용적 시선,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는 성규범이 바탕이 된다.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를 관련시키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묻는 2차가해이고,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 한국사회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5 성폭력을 경험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X)

성폭력을 경험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자를 험한 일을 겪은 대상으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대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젠더감수성교육매뉴얼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 2014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중요하지 않은'일, '수치스러운' 성문제, '여성의 정조에 대한 문제', '여성들의 거짓말'로 치부되어 왔기에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과 성문화는 성폭력생존자가 적절한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문제의식도 희소한,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려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지금까지 7만여 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언 활동, 정책 감시 및 비판, 성폭력 통념을 깨기 위한 출판사업과 대중교육 등 활발한 반성폭력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거리괴롭힘 소멸 프로젝트 넌(NON)진상(2016~2017)은 여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길거리괴롭힘을 없애고 공공장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2015년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함께 사례 수집을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실태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상'에 맞서는 힘을 기르고자 연 2회 이상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길거리괴롭힘과 성폭력·성희롱을 광장에서 외치는 '말하기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난다 뛴다 다르다 II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매뉴얼

2쇄(개정증보판)	2016.12. 12
초판	2014.10. 31
발행인	이미경
발행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편집	방이슬
인포그래픽	박준모
삽화	달군
강사단	고재경, 김기태, 최하란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합정동) 32-42
전화	02-338-2890~1
홈페이지	www.sisters.or.kr www.jinsangroad.org
블로그	stoprape.or.kr
소셜미디어	facebook.com/ksvrc @stoprape @jinsangroad_org

지금까지 자기방어훈련에 참여해준 강사와 기획단, 모든 참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책자의 초판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으로, 개정증보판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습니다.